

2013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2013. 12





발간에 즈음하여...

최근 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글로벌화됨에 따라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업간의 경쟁에서 직무발명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본 우수사례집은 직무발명의 개요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규모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서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하기 위해 본 우수사례집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종업원 및 사용자가 기업활동에서 실무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우수사례 등을 다루어 기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이 본 우수사례집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우수발명을 창출함으로써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목 차

❖ 직무발명에 대한 소개	1
❖ 의의 및 현황	3
❖ 제도의 필요성 및 근거규정	3
❖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혜택	6
❖ 직무발명제도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7
❖ 직무발명제도 우수 운영사례	11
❖ 삼성전자(주)	13
❖ (주)에스에프에이	17
❖ (주)케이씨텍	24
❖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	35
❖ 팅크웨어(주)	44
❖ (주)골프존	51
❖ (주)인프라웨어	65
❖ (주)광림	78
❖ (주)플레이오토	85
❖ (주)원스테크넷	94

❖ 부록	101
직무발명 모델규정	102
Q&A로 알아보는 직무발명제도	111
❖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111
❖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권리와 의무	117
❖ 예약승계규정	122
❖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	125
❖ 직무발명을 둘러싼 다툼의 해결	131
❖ 기타	134
개정 발명진흥법(직무발명관련) 및 동시행령(안)	136







직무발명에 대한 소개

의의 및 현황

직무발명은 ①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②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③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¹⁾ 직무발명에서의 ‘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에 따라,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즉, 조직화되고 충분한 자본을 가진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개인발명에 비해 직무발명의 비중과 가치가 점점 증대하고 있음

▶ 국내 특허출원 중 법인(기업 등)의 특허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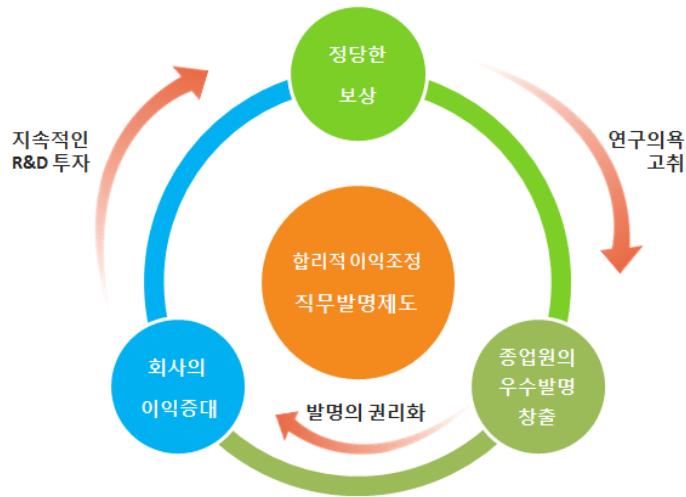
구분	‘08	‘09	‘10	‘11	‘11	‘12
개인출원(A)	33,443	35,588	33,267	35,424	36,610	36,610
법인출원(B)	137,189	127,935	136,834	143,500	148,187	148,187
계(C)	170,632	163,523	170,101	178,921	184,797	184,797
비율	80.4%	78.2%	80.4%	80.2%	80.2%	80.2%

[특허청]

제도의 필요성 및 근거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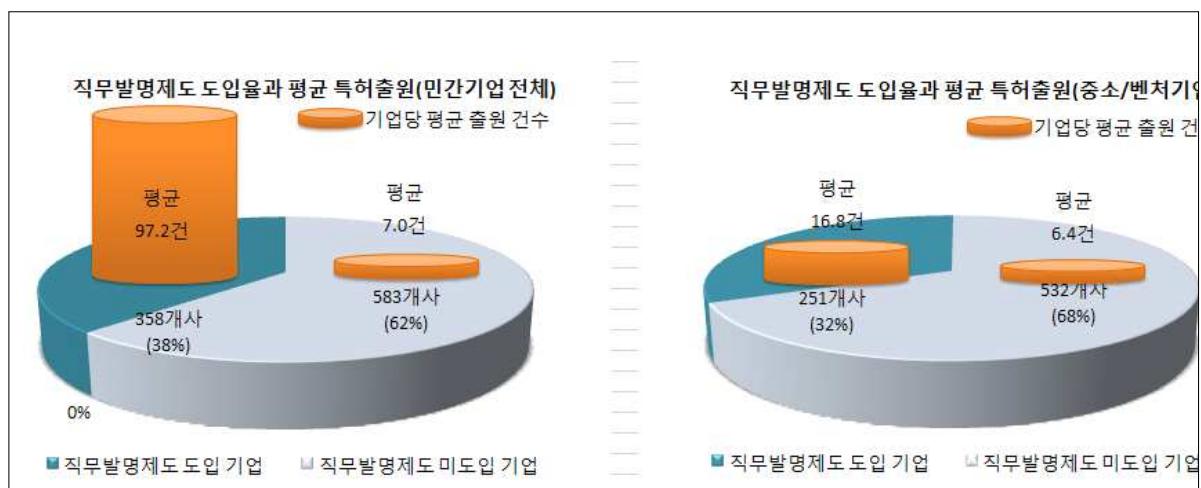
현대사회의 발명형태는 개인중심의 발명형태로부터 기업 등 조직적인 발명형태로 이행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의 귀속관계가 문제되는데, 직무발명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한 사용자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에서의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2013년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그 동안 미비했던 점을 개선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가 발명진흥법에 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운영되게 되었음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직무발명보상이 발명의 건수 증가 및 발명의 질향상으로 이어져 기술개발을 촉진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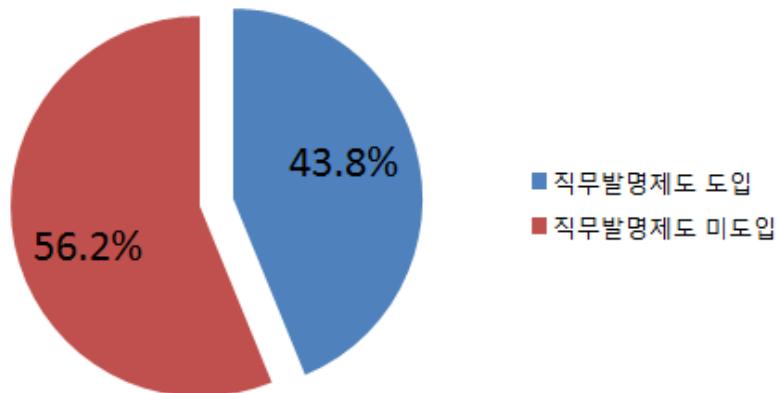


* '11년 지식재산활동실태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기 통계에서와 같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는 기업보다 평균 특허 출원건수 몇배가 됨은 직무발명 증대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왔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회사에서 적정한 보상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직무발명제도가 획일적인 급여제도로 인한 직원들의 근로의욕저하와 이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보여 주는 것임

이러한 선순환 효과는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 증가 및 애사심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후술하는 우수사례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례와 인터뷰가 언급되고 있음



출처 : 직무발명제도 도입기업 현황,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12.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그러나 직무발명제도는 ①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의 난해함 ② 기업의 획일화된 경영방침 ③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것은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④ 연구개발자 아닌 다른 직무담당자들과의 형평성 등과 같은 이유로 도입률이 일본(2007년, 86.7%) 등에 비해 저조한 형편임

하지만,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우수 운영기업의 사례에서처럼,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직원)에게는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사용자(회사, 연구소, 대학)에게는 종업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이용한 경쟁력 강화, 매출신장, 기술축적,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혜택

가. 정부 세액공제

▶ 종업원(발명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기업)

직무발명 보상 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시행령 제8조 제1항관련 별표6]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한다.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발명자)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사용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특시행령 제8조 제1항관련 별표6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사용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발전에 기여

“기업은 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발명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종업원은 보다 열심히 연구개발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등 발명자에게 좋은 처우를 하고, 이것이 종업원의 훌륭한 발명으로 다시 이어진다면, 기업과 기술자 모두가 풍요롭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도를 두는 이유입니다.”²⁾

2) 김준효, 「아이디어 스파크」, 2011년, 159~160면, 양문출판사

직무발명제도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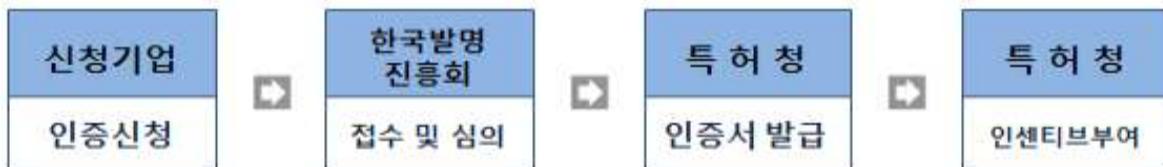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인증제가 기업의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스스로 보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

□ 운영 방법

- 인증제가 기업의 규제정책이 아닌 기업의 보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로 접근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직무발명 보상이행 실적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평가
- 인증제도의 유효기간은 2년

□ 인증서 발급 절차



- * 인증여부의 통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료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 인증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신청) 연중 수시 접수
- (심의) 신청 건수에 따라 월 1~2회 심의위원회 개최
- (발급)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여부를 기업에 통보
- (인센티브)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신청 자격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인증 심의 기준

- 평가 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보유 여부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보상형태 및 보상액 등 보상 기준,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의 규정 여부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의 규정 여부
직무발명보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보상 사실 (비금전적 보상 포함) - 직무발명 건수 대비 직무발명보상 건수의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 실시보상 또는 처분보상의 실적 (출원유보보상 포함)
직무발명보상규정의 합리적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형태와 보상액 등 보상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와 종업원 간 협의 및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 보상기준의 공표·제시 등 종업원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 사내 직무발명심의기구의 설치·운영 및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이견,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상황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함은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말함. 각 평가항목별 평가의 대상은 우수기업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사실, 실적 등에 한하며, 직무발명보상 규정의 경우 우수기업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인증 기준 :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업의 자발적인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과 보상 문화의 확산을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지원사업 대상 선정 時 인센티브 부여

- 인증 기업 특허등 우선심사 대상
- 사업화 촉진사업 지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 일차적으로 특허청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가점 부여
 -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특허청 지원사업 (현재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 규모	지원 한도
민간 IP-R&D 전략지원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지원 사업	11,160	100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 IP 활용전략 지원	2,352	70
	특허기술평가 지원(일반)	1,705	50
	특허기술거래컨설팅 지원	718	6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IP스타기업 육성사업	12,980	70/200
	디자인 가치제고사업 (디자인개발/디자인·특허융합)	62	25/50

–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현재기준)

(단위 : 억원)

사업명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	576
	혁신기업기술개발	1,621
	기업서비스연구개발	155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585
	센터연계형기술개발사업	180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619
	민관공동투지기술개발	500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기술개발	1,117
	1인 창조기업기술개발	96

 향후 확대 시행

▷ 연차등록료 감면 추진('14년 1/4분기 예정)

 세액공제 혜택

- 사용자 입장 :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발명자 입장 :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직무발명제도 우수 운영사례

삼성전자(주)

가. 기업 개요

• 본사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 홈페이지 : www.samsung.com/sec

• 설립일 : 1969년

• 대표이사 :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

• 주생산품 : 스마트폰, 반도체, DTV

• 직무발명 도입년도 : 1979년

• 주요연혁 : 1969년 회사 설립

1974년 반도체 사업 시작

1992년 DRAM 세계 1위 달성/Cellular Telephone System 개발

2002년 Flash Memory 세계 1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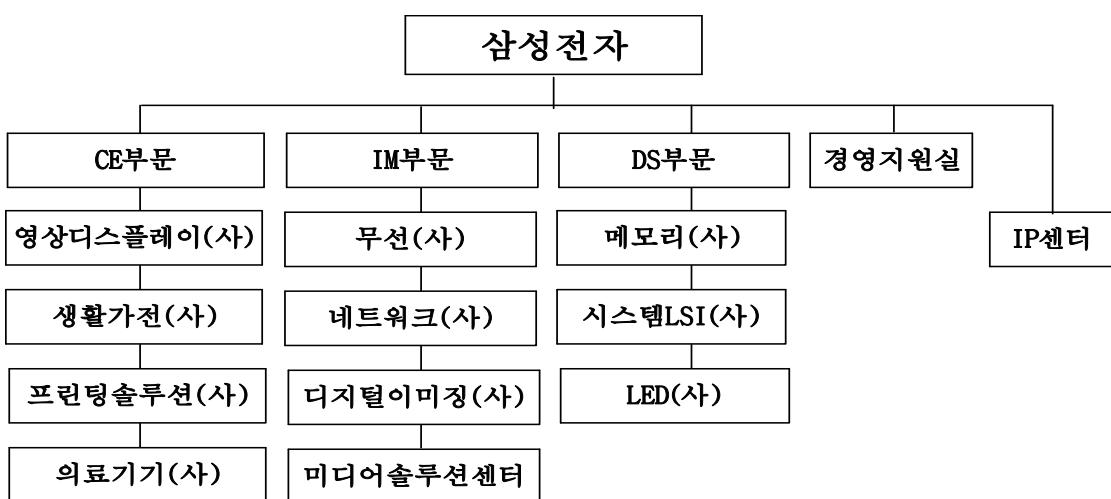
2006년 TV 세계 1위 달성

2009년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10조원 동시 돌파

2010년 글로벌 전자업계 매출 1위 달성

2012년 휴대폰 세계 1위 달성

▶ 조직도



나. IP 전담부서 운영

삼성전자는 일련의 특허 공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특허조직을 전문성 중심으로 IP전략팀, 라이선싱팀, 기술분석팀, IP법무팀 등 4개 팀으로 재편하고, 각 사업부에는 출원그룹을 배치하여 발명, 특허창출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 250명이던 특허 전담인력을 500 여명으로 늘리는 등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허 전담인력은 제품 생산 전 과정에 투입돼 특허 관련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업무 이외의 제품이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기술의 특허 현황, 기존 특허를 피해 개발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등 기존보다 한층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미국 특허등록 현황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112,72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미국에서 5,081건의 특허를 등록해 2006년부터 7년 연속으로 미국 특허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 직무발명제도 운영 및 효과

삼성전자는 1979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직무발명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하거나 또는 발명활동 및 제반 특허 활동에 현저하게 공헌한 임직원을 선발하여 특히 보상 및 포상을 적극 시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2013년 9월에는 기존의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보상 대상, 규모를 파격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임직원이 업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특허를 최초 출원할 때 출원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특허를 자사 제품에 적용했을 때 실시 기간에 따라 자사 실시보상금을 특히 1건당 수 천만원을 보상하고 또한 타사에 특허 라이선스하여 특허료 수입이 있거나 특허료 절감에 기여한 특허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각각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대상’ 포상제도를 통해 매년 선발된 특허왕에게는 1억원을 포상하는 등 파격적인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우수특허 발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사상의 특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04억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3년 개정한 제도의 적용으로 보상금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고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눈부신 기술 혁신을 이루었으며, 제품 경쟁력에서 글로벌 경쟁사보다 항상 한발자국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2011년 165 조에서 2012년 201조원으로 무려 21.9%나 성장했으며, 올해도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실적은 특허를 중시하는 문화가 삼성전자 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며, 회사에서도 파격적인 직무발명보상 제도 등 발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 특허교육 실적

연구원에 대해 지속적인 특허 Mind 고취 및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특허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특허출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지적재산권 교육을 지속적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 전사 연구개발 인력 특허교육 과정 개설

전사 연구원 특허 교육으로 신규 개설하여 연구원 자체 특허정보 검색 스킬 강화 및 특허

출원 품질 확보를 위한 직무발명 신고서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해 실습 및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한 연구원 특허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약 6,0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5,000여명 대상으로 특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명 심의위원 특허 교육

직무발명 품질향상 및 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30여명의 우수 특허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미국 특허 심사업무 뿐 아니라 특허 전략, 기술 사업화와 같은 IP 전문 교육을 직접 접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심의위원들의 발명 심의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특허 평가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에스에프에이

가. 기업개요



- 본사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691번지
- 홈페이지 : www.sfa.co.kr
- 설립일 : 1998년 12월 설립
- 대표이사 : 김영민
- 주생산품 :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태양전지 제조장비, 반도체 제조장비, 물류시스템 자동화 설비, 공장 자동화 설비, 항공우주설비, 핵융합설비
-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5년 8월
- 주요연혁 : 1998.12 (주) 에스에프에이 설립
1999.08 ISO 9001 인증 획득(BSI)
1999.12 벤처기업 등록(경남지방중소기업청)
2000.07 기업부설연구소(한국자동화기술센터) 설립
2000.11 제37회 무역의 날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01.11 제38회 무역의 날 2,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1.12 기업공개(코스닥 등록)
2002.12 에스에프에이(Shenzen) Limited 설립(중국 심천)
2003.12 아산사업장 설립
2004.06 제1회 대한민국코스닥 대상 수상(최우수신뢰기업상)
2004.12 제38회 무역의 날 3,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5.12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획득
2006.06 IR52 장영실상 수상(25주, LCD용 편광판 부착기)
2007.03 제4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기업 선정'
2007.11 IR52 장영실상 수상(8세대용 LCD 원판 스토크)
2008.11 제38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상 지경부장관상 수상(8세대용 Scriber)
2008.12 대한민국기술대상 지경부장관상 수상(8세대용 Scriber)
2009.05 제44회 발명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2010.11 제47회 무역의 날 7,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1.12 대한민국기술대상 은상(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2011.12 인쇄전자용 Offset 인쇄 시스템 2011년도 세계일류상품 선정
2012.06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한국거래서,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2013.05 2013년 투명회계대상 최우수상 선정(한국공인회계사회)
2013.06 201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나. 주요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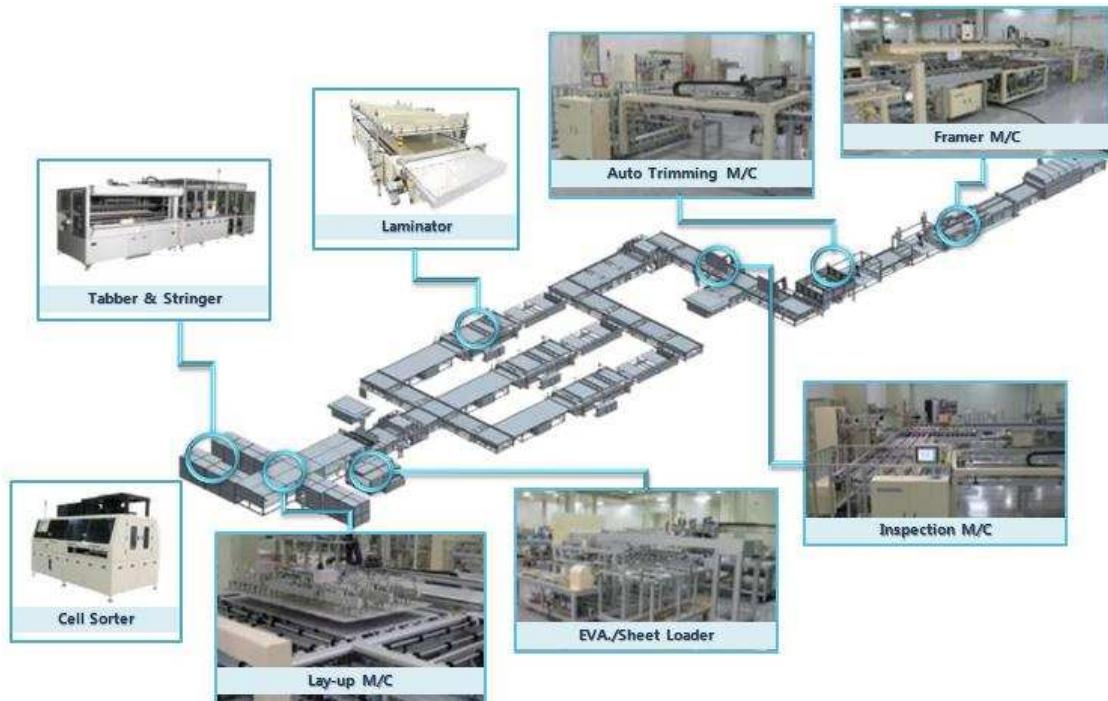
1. Display 분야

TFT Equipments	Module Manufacturing System	AMHS Logistics System
PECVD	Scriber Polarizer Attacher	Clean Stocker EMS
Sputter	Edge Grinder Bonding System	LIFTER[Magnetic Levitation] LGV/AGV
Gravure off-set Printer	Index CST Conveyor	OHT OHS

2. 일반 물류 및 FA 분야

자동 창고 및 물류 센터	기타 일반 물류 및 FA
Automated Storage Retrieval System	Auto Track(Hospital Facility) Cable Manufacturing
Distribution Center	Auto Clave(Airplane) Ass'y Line

3. 태양광 제조 장비 분야



다.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영

(주)에스에프에이는 경영전략팀 내 전담인력 1명 및 겸임인력 2명이 지식재산권 관리를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업무 대비 담당인력이 부족하긴 하나 특허법률사무소와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

2013년 10월 31일 기준

구 분	출 원	등 록	합 계	비 고
국 내	특 허	111	533	644
	실용신안	1	8	1
	디 자 인		0	0
	상 표		8	8

구 분		출 원	등 록	합 계	비 고
해 외	특 허	20	84	104	
	상 표		1	1	
보 유 합 계		132	634	766	

마. 특허교육 실적

(주)에스에프에이에서는 임직원들의 직무발명 의욕 고취 및 양질의 지적자산 창출을 위하여 온라인 특허 교육 및 분기별 특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디어 발상법, 특허정보 검색 교육 및 특허 소송/분쟁 대응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규정

(주)에스에프에이는 2005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2차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직무발명 등급별 보상과 발명자 기여도에 따른 차등 보상입니다. 보상금은 출원, 등록, 프로그램 등록 보상금으로 구분되며 아래표와 같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평가등급	특허 출원 보상금	특허 등록 보상금	프로그램 등록 보상금
S급	150만원	300만원	일괄 60만원
A급	70만원	100만원	
B급	40만원	60만원	
C급	30만원	40만원	

사.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1.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2013년 상반기 지급 기준 2,130만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특허 출원이

2013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출원 및 등록 상황을 고려할 때 2013년 하반기 직무 발명 보상금 지급 규모는 당사 역대 최대로 6,000만원 이상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며, 매년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상현황

단위 : 만원



실시년도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프로그램 보상금	합계
2009년 하반기	100	190	0	290
2010년 상반기	100	110	0	210
2010년 하반기	320	720	0	1,040
2011년 상반기	520	930	0	1,450
2011년 하반기	2,420	630	360	3,410
2012년 상반기	1,480	930	0	2,420
2012년 하반기	3,550	570	240	4,360
2013년 상반기	1,130	760	240	2,130
합계	9,620	4,840	840	15,300

2. 직무발명 우수사례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인쇄전자장치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전극을 형성하는 인쇄전자장치에 있어 인쇄품질이 저하되는 기준의 접촉방식을 비접촉 방식으로 구현함으로써 고성능 인쇄전자 장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장비 매출이 200% 이상 신장되었음은 물론 이를 토대로 개량 특허를 다수 개발 할 수 있습니다.

마.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제도운영 효과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 한 후, 임직원의 직무발명 의욕 고취를 위해 2차에 걸쳐 관련 규정을 발명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차 개정전후를 비교 할 때 특허 출원수는 도입전 대비 238% (도입전년도 출원건수 37건 \Rightarrow 2012년 출원건수 125건)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확보된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당사는 대내외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의 변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새로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지적 자산화는 당사의 기술보호는 물론 지속적인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창립년도(1999년) 465억원이었던 매출이 2012년 4,809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이를 CAGR 기준으로 볼 때 매년 18%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모든 것이 달성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본 제도를 통해 확보된 지적자산이 당사의 기술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적극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적 자산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당사 장비에 지속적으로 적용, 생산하여 향후 더 많은 매출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케이씨텍

가. 기업 개요

COMPANY PROFILE	대표이사	고석태, 박영순
설립연도	1987년	
KOSPI 상장	1997년	
위치	안성(3개 공장) / 서울	
	제1공장 : CMP, Gas System	
	제2공장 : WET, ALD	
	제3공장 : FPD, Coater, Slurry	
매출액	1,153억원('12년)	
직원수	414명('13년 9월말)	

WORK PLACE



- 본사주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68-1

- 홈페이지 : <http://www.kctech.co.kr>

-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6년

- 주요연혁 : 1987 설립

1993 반도체 장비 개발 및 생산

1995 합작법인 KPC 설립

1996 합작법인 TCK 설립

1997 주식거래소 상장

1998 LCD 장비 개발 및 생산

2003 반도체 소재 개발 (Ceria Slurry) 시작

2004 우수특허제품대상-국무총리상

2005 반도체용 12" 세정기 양산판매 (Wet Station)

2006 대만 법인 (쥬베이) / 중국 법인 (우시) 설립

합작법인 KKTech 설립

산업자원부 주관 세계초일류 제품 선정(TFT-LCD 고집적 세정장치)

2007 ALD 개발 시작

무역의 날 행사 3000만불 수출탑 수상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서 획득

2008 반도체 소재 양산 판매
 (주)케이씨티앤에스 설립
 서울사무소 이전(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8-27)

2009 반도체용 12吋 Single Cleaner 양산 판매
 CMP 사업 인수 (두산메카텍)
 노사문화대상-노동부 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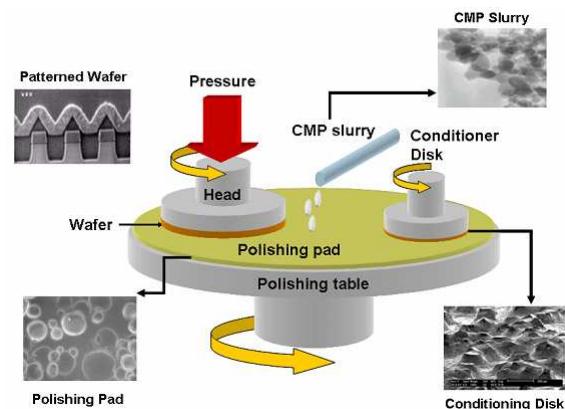
2011 (주)케이씨아이엔에스 설립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우수상) 수상 – Ceria Slurry

2012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동상) – CMP장비

나. 주요 제품

COMPANY PRODUCT	SEMICONDUCTOR	CMP	WET	ALD	GAS SYSTEM
FPD	COATER, TRACK	FPD WET			
MATERIALS	CMP SLURRY				

1) CMP 장비



CMP(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장치 시스템은 크게 구분하여 Wafer 카세트의 장/탈착장치>Loading & Unloading station), Wafer 이동기구, 연마 기구부, Wafer 세정 기구와 이들의 시스템 제어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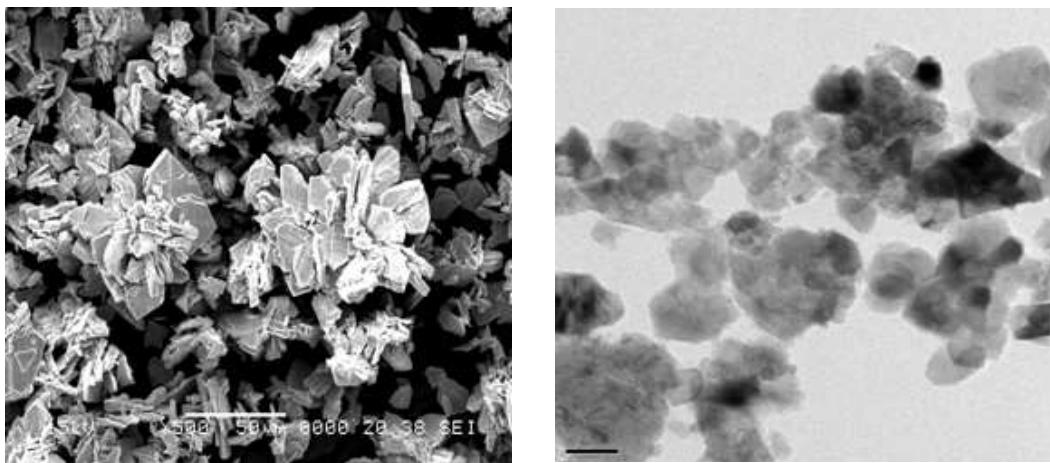
이중에서 연마 기구부는 Wafer를 지지하여 회전과 가압을 주는 연마 Head부(Polishing Head), 연마 Pad가 부착된 연마 정반(Platen) 및 구동기구, 연마 Pad의 Conditioning 기구, Wafer 세정기구, Slurry 공급기구로 구성된다.

가공정밀도의 확보를 위해서 기계적 연마에 있어서 Wafer 표면의 제거속도는 연마압력과 연마속도에 비례해야 하므로, Wafer 표면의 어느 위치에 대해서도 연마하중, 연마속도, Slurry의 공급량, Wafer 표면과 연마 Pad의 마찰현상, 연마온도 등을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광역 평탄화 및 잔류막 두께의 균일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해외 선진업체의 300mm CMP 장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거의 99.9%로 CMP장비의 국산화는 국내 반도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핵심 제품으로 그 개발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기업에서 각자의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독자 기술로 제품 생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주)케이씨텍은 2009년 두산메카텍의 CMP사업을 인수 함으로써 국산화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 Ceria Slurry



반도체 웨이퍼 평탄화 작업(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에 필요한 연마액. 반도체 웨이퍼 평탄화 작업을 할 때 슬러리를 사용하면 화학적 연마와 기계적 연마를 동시에 수행

함으로써, 공정시간 단축 및 웨이퍼의 평탄도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CMP 슬러리는 나노급 반도체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평탄화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History

- 양산체계 구축 : '04년 3월
- Hynix 1차 평가 : '05년 7월
- Hynix 양산 평가 완료 : '07년 3월
- 삼성전자 국산화 대상 Slurry 선정 : '07년 4월
- Hynix M8 초도 매출 : '07년 5월
- 동부하이텍 성능 평가 완료 : '07년 8월(연간 300톤 이상의 생산 능력 보유)

또한, 히타치케미칼은 2011년 11월15일 미국에서 케이씨텍을 상대로 Ceria CMP 슬러리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케이씨텍은 2012년 7월 3일 국내에서 히타치케미칼을 상대로 Ceria CMP 슬러리 관련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내에서 특허 소송이 진행되어 왔는데, 2013년 4월 양사 합의로써 분쟁이 모두 종결되었다.

이는 양사 사이에 체결된 제소금지합의(Non Assertion Agreement)에 따른 것으로서, 위 합의를 통하여 Ceria CMP 슬러리 사업에 관련된 특허 이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슬러리는 반도체 웨이퍼 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연마액이며, 특히 케이씨텍이 다년간의 자체 개발로 상업화에 성공하여 주요 반도체 소자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Ceria CMP 슬러리는 초고집적 반도체 생산에는 필수적인 제품으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FPD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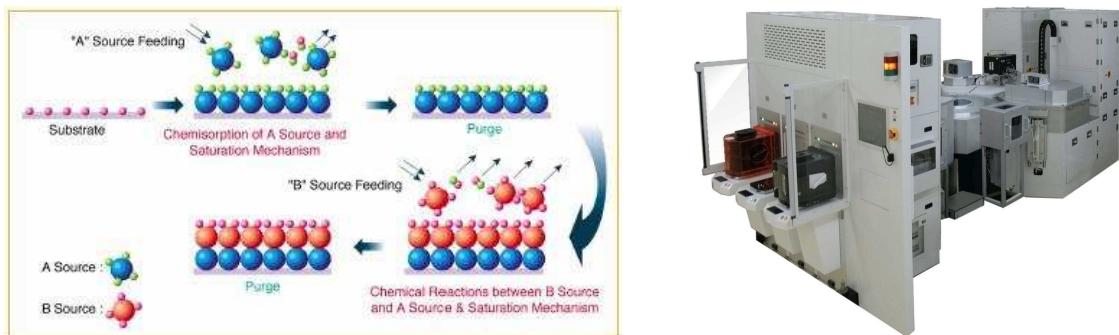
케이씨텍 주력 장비로 FPD 제품으로는 LCD 전공정 핵심 장비인 Spinless Coater와 전공정 습식 장비인 Etcher, Developer, Stripper, Cleaner가 있으며, PDP 용 건식 세정 장비인 CO₂ 세정기가 있습니다.

1987년 2월 설립 이래 FPD 장비 전문 기업으로 성장 하였으며, 국내 기업으로 10~20%의 점유율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LCD 업체 모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점유를 목표로 중국, 대만에 법인을 두고 꾸준한 매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케이씨텍은 우수 특허 보유 및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하여 단 기간 내 해외 유수 기술의 격차를 좁힘으로써 새로운 국내 FPD장비 기업으로써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4) ALD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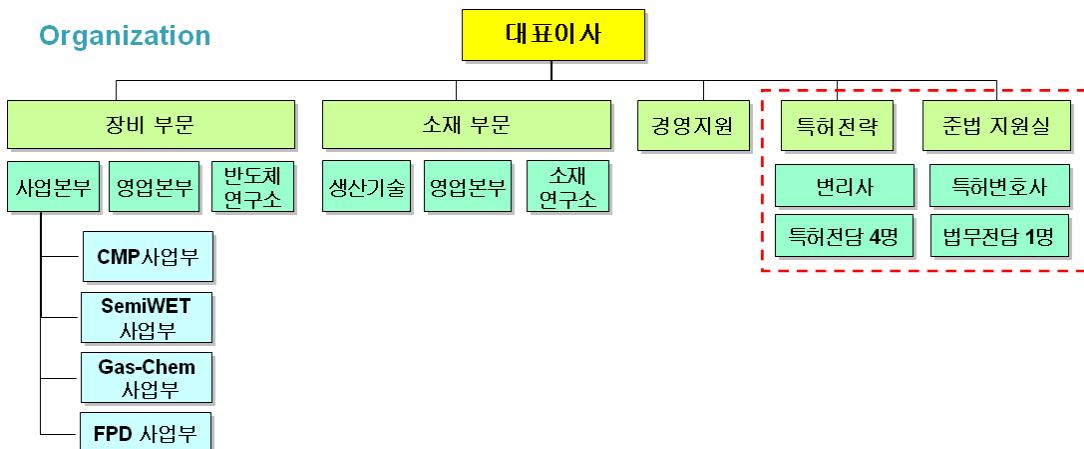


Saturated Surface Reaction(포화 표면 반응)의 박막 성장 기구를 이용하여, 반응을 일으키고 Cycle 횟수에 의해 Thin Film의 두께를 원자층(Atomic Layer) 단위로 제어, 성장 시키는 장치로 동일 챔버 내에 Thermal ALD & Plasma ALD 구현하고, Gas 혼합 방지 및 Pure ALD, Top & Down Vacuum 기술 등 경쟁사 대비 30%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수의 우수 핵심특허 및 꾸준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특허전담부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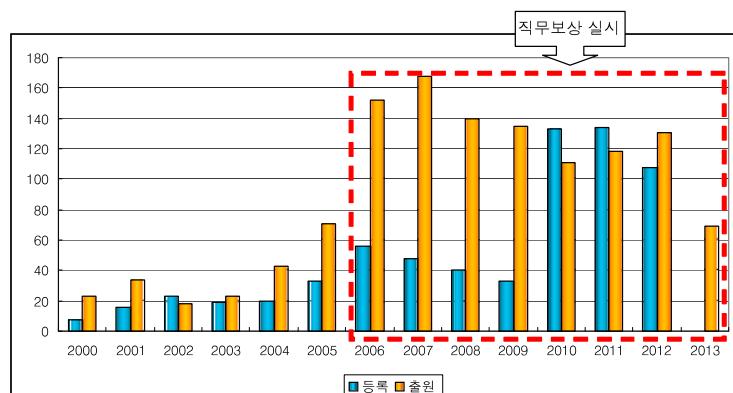
(주)케이씨텍은 IP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경영’에 따른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특허전략팀을 지정하여 전담인력5명(사내 변리사, 기술거래사 포함)

및 소송 전담인력 2명(사내 변호사 포함)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담인력은 매달 아이디어 회의를 통하여 발굴된 발명의 출원 진행부터 특히 등록까지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 연간 150여건 이상의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50여건 이상의 특히 조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전략적 특허’ 개발 및 유효특허 발굴.
- 2) 매월 진행하는 경쟁사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 특허 분쟁을 방지하고 개발 방향에 따른 독자적 특허 방향 및 출원 유도.
- 3) 외부 특허 법인을 지정 운영하여 산업체재산권 확보 및 법적 분쟁 대응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

라.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



'06년 이후 임직원의 특허 인식 개선과 직무보상 시행 후 기존 발명 제안 횟수 상승과 더불어 지속적 특허 출원이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년 평균 130여건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2년 특허포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질적, 양적인 특허를 확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매월 시행되고 있는 특허 “발명의 날”을 통하여 엔지니어와 특허전략팀의 아이디어 미팅을 통하여 질적 특허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초안 작성 및 OA, 등록까지 자사의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마. 특허교육

임직원의 특허에 대한 이해 및 발명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경쟁사 국내 특허 전면 분석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업부 엔지니어와 특허전략팀의 주 1회 2시간의 특허회의를 통한 특허 원문의 상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특허전략팀의 특허 마인드와 엔지니어의 기술이 융화되면서, 창의적 특허 출원을 실현 할 수 있었으며, 회의를 통하여 출원되는 대부분의 특허가 핵심 기술의 중요 특허로 도출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내 변리사를 통하여 각 사업부별 명세서 분석 및 특허검색(키프리스 등)의 활용법 등 다양한 각도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엔지니어의 특허 관점을 보다 쉽고 창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 외부 변리사 및 지정업체 선정하여 특허교육 실시
- 매월 특허전략회의 진행(대표이사 및 임원, 사업부장 참석)
- 특허 전담인력 외부 교육 진행(매년 2~4회 실시)

바. 직무발명 보상 및 사례

1) 보상금 지급내역(2012년 기준)

년도	월	출원 보상금	등록 보상금	우수특허 포상금
2012	1	200,000	1,802,000	* 최우수 특허상: 300만원(1人) * 우수 특허상: 100만원(3人) * 최다출원상: 100만원(1人) * 총 700만원 포상
	2	1,800,000	1,420,000	
	3	1,199,000	1,610,000	
	4	600,000	2,775,000	
	5	400,000	2,045,000	
	6	2,348,000	1,275,000	
	7	1,400,000	2,540,000	
	8	1,199,000	3,475,000	
	9	1,199,000	2,755,000	
	10	599,000	2,550,000	
	11	4,890,000	2,275,000	
	12	8,077,000	2,250,000	
소 계		23,911,000	26,772,000	7,000,000
보상금 총합			57,683,000	

2) 직무발명 보상기준

구 분		국내특허출원		해외특허출원	
		금액	비고	금액	비고
출원보상금	특허	₩200,000	고정금 지급	₩300,000	고정금 지급
	실용신안	₩100,000		₩150,000	
	의장, 상표	₩50,000		₩100,000	
등록보상금	특허	₩300,000	고정금 지급	₩500,000	고정금 지급
	실용신안	₩200,000		₩300,000	
	의장, 상표	₩100,000		₩200,000	

- ♣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은 각각의 기준으로 별도로 지급.
- ♣ 해외출원의 경우 최우선 출원국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
- ♣ 실용신안일 경우, 기술평가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보상금을 지급.
- ♣ 출원보상금은 접수된 출원보고서를 기준으로 정함.
- ♣ 등록보상금은 접수된 특허증을 기준으로 정함..
- ♣ 공동발명일 경우, 출원 및 등록 보상금은 대표발명자 50%, 공동발명자 50%으로 분할 지급.
- ♣ 공동발명자 중 퇴사자가 있는 경우, 퇴사자를 제외한 인원은 원래 할당된 보상금만 지급함.

【예시】

⇒ 대표발명자 A와 공동발명자 B,C,D가 특허를 함께 출원한 경우:

출원보상금 ₩200,000	A(50%)	₩100,000 지급.
	B,C,D(50%)	₩100,000 / 3인 = 인당 ₩33,000씩 지급.
등록보상금 ₩300,000	A(50%)	₩150,000 지급.
	B,C,D(50%)	₩150,000 / 3인 = 인당 ₩50,000씩 지급.

처분 보상금	처 분 금		보 상 금 산 정
	1,000만원 미하		처분금의 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하		처분금의 3% + 1백만원
	5,000만원 초과		처분금의 2% + 2백만원
	처분 보상금 최고 한도 1000만원		
사업화 보상금	당해영업미익 X 공현도 X 10%		
	당해영업미익	Project의 실시에 의한 매출액 - 제반경비(인건비, 재료비, etc)	
	공현도	당해 제품 대비 직무발명의 기여도 (1-회사총 공현도)	

3) 우수특허 선정 및 특허발명왕 선정(매년)

No.	내용	'12년					비고	
		1Q	2Q	3Q	4Q	1Q		
1	성과 특허상 (600만원)	우수 특허 출원 모니터링					최초 시행 ※ 평가 기준 미달시 지급하지 않음	
		포상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특허상 [1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창 및 인센티브 300만원 ◆ 우수 특허상 [3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창 및 인센티브 100만원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평가 : 특허전략팀에서 대상 특허 선정 [6~10건] ▶ 2차 평가 : 특허기술 전략회의에서 최종 선정 [별첨#1 평가 기준표 참고] ▶ 최우수 특허상 ① 점수 평균 90점↑ ② 평가 1위 [(①② 모두 만족)] ▶ 우수 특허상 ① 점수 평균 80점↑ ② 평가 1위 ~ 4위 중 선별 [(①② 모두 만족)] 					
2	최다 출원상 (100만원)	특허 출원 활동 우수자 모니터링					최초 시행 ※ 평가 기준 미달시 지급하지 않음	
		포상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다 출원상 [1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100만원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평가 : 특허전략팀에서 대상자 선정 [최다 특허 출원자] ▶ 최다 출원상은 Main 발명자를 기준으로 1년에 5건 이상 출원하여야 함 					

임직원의 특허출원 장려와 우수 특허 선점을 위하여 '12년 최초 시행 하였습니다.

심사 평가 시 기술의 독창성, 실시 가능성, 독점성 등 평가의 다양성을 두고 각 사업부 별 임원 및 대표이사의 평가로 진행 되었으며, 이 결과 포상의 따른 엔지니어의 관심 및 인식

개선에 따른 소수 엔지니어의 출원에 편중되던 것이 모든 엔지니어의 참여가 이뤄지면서 활발한 특허 출원 및 핵심 우수 특허를 창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 직무발명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1) CMP 국내업체 독자 개발 진행

2012년 대한민국 신기술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케이씨텍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사와 차별화된 Spindle의 이송방식과 Dual Cleaner를 적용한 Layout 등의 여러 독창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고생산성의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높여 2012년 300 mm Copper CMP 장비 및 2013년에는 해외까지 시장을 넓힐 것입니다. 또한 300 mm CMP 기술을 바탕으로 Wafer Back-side Polisher를 개발할 것이며, 450 mm CMP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CMP 관련 다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H社 Ceria Slurry 관련 미국 소송 및 한국 무효심판 제소금지 합의

Ceria Slurry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에 쓰이는 연마액이다. 히타치 케미칼이 2011년 11월 미국에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 되었으며, 케이씨텍은 2012년 7월 국내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히타치와 케이씨텍 양사의 제소금지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2013년 4월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다.

3) 직무발명 우수기업 선정



발명진흥회 및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2013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 보상을 통한 창조적 기술개발과 우수인재 창출, 반도체 장비 분야의 핵심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

가. 기업 개요



- 본사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원율북로 172
- 홈페이지 : www.woojinhen.com
- 설립일 : 2006년 7월 7일
- 대표이사 : 백봉기
- 회사 소개 :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는 산업의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측기술 분야의 선봉에서, 오직 꾸준한 연구개발투자와 설비도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려 글로벌 회사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 회사 연혁
 - 1980.05.13. (주)우진 법인 설립
 - 1986.06.27. 국가 교정 기관지정(공업진흥청)
 - 1999.05.31. 정밀 계측기 협동화 단지 준공 및 입주

- 2003.02.12. 우수제조기술 연구 센터 -ATC로 지정(산업자원부)
- 2005.12.08. KT마트획득(과학기술부) : 극저온 LNG 장탱크의 Cool-Down 온도센서 제작기술
- 2006.07.07. (주)우진에서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로 분사
- 2006.07.20. KOLAS 지정
- 2006.09.04. 기술연구소 신설
- 2006.12.28. 제3회 대중소 기업협력대상 경영혁신부문 표창 수상
- 2003.04 ~ 2008.03 : 철강용 계측센서 및 시스템 개발 과제 수행(ATC)
- 2008.06 ~ 2010.05 : 용선 성분센서 및 계측시스템 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 사업 영역



Petrochemical and Others Industry

- Supply Sensor, Instrument and Calibration Service



Steel Industry

- Supply Probe, Sensor and Instrument



Foundry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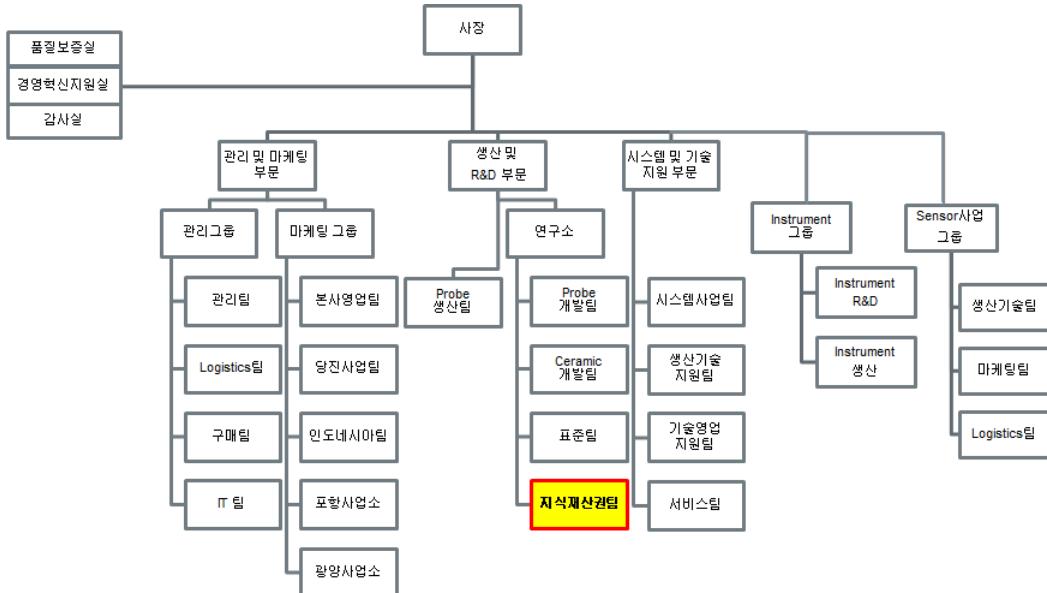
- Supply Probe and Instrument

우리 회사의 사업 영역은

1. 제강산업용 프로브와 센서, 계측기
2. 주물용 프로브와 계측기
3. 석유화학 및 기타 산업용 센서, 계측기 및 교정 서비스의 세 부분이 있습니다.

- 조직 구성 : 3부문 4그룹 3실 그리고 연구소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권팀은 연구소 내에 위치합니다.

▶ 조직도



- 전담직원 : 팀장 및 팀원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지식재산공학 석사학위자로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지식재산권팀은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리만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식재산경영계획 수립, 지식재산권 관리 및 지원(교육) 업무, 분쟁 및 감시 업무, 산업체재산권 및 저작권 취득 직무발명 심의/보상 업무 그리고, 무형정보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제도 도입 배경과 현황

- 우리회사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규로써, 직무발명규정을 갖고 있으며, 직무발명규정은 2006년 회사의 설립과 함께 재정 되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과 관련기술력의 신장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회사의 비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은 곧 회사발전이며, 직무발명에 관련된 규정은 영업활동과 기업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시스템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입니다.
- 최근 급변하는 지식재산관련 법령과 그 보폭을 함께하며, 2006년 최초 재정이래, 총 3차례의 사규개정이 있었으며, 최근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4차 개정이 준비 중입니다.

2013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직무발명보상은 아래 표와 같이 출원, 등록, 실시, 처분, 방어, 유보 보상 등 총 6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과 금액,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1발명 다 출원의 경우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 종류	보상 내용	보상 금액	지급시기
출원보상	직무발명을 회사명의로 출원한 경우	국 내 ▷ 특 허 20만원/건 ▷ 실용신안 20만원/건 ▷ 디 자 인 10만원/건	출원 신청 후 1개 월 내
		해 외 ▷ 특 허 20만원/건 ▷ 실용신안 20만원/건 ▷ 디 자 인 10만원/건	
등록보상	출원발명이 등록 받았을 경우	국 내 ▷ 특 허 100만원/건 ▷ 실용신안 75만원/건 ▷ 디 자 인 50만원/건	등록 후 1개월 내
		해 외 ▷ 특 허 100만원/건 ▷ 실용신안 75만원/건 ▷ 디 자 인 50만원/건	
실시보상	등록된 산업재산권을 상용화하여 회사의 이익에 공헌 하였을 경우 (5%)	해당 발명으로 인한 순이익의 5%. 단, 최고 1억 원을 원칙으로 한다.	실시 2,5,8년 차*
처분보상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실시를 하여한 경우	처분 수익금의 일부 (5%)	수입금이 납부된 후 2개월 내
방어보상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의신청 : 10만원/건 이의성공 : 20만원/건	신청 및 성구 후 1개월 내
유보보상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승계 후 미 출원 건.) 회사가 유보, 취하, 포기를 할 경우 (승계 후.)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신고 후 4개월 내 ...

* 특허의 경우. 총 3회 지급, 자세한 사항 첨부 직무발명규정 참조.

- 직무발명규정은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group ware 상에 공표되어 있으며,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사내의 산업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신고발명의 승계여부와 출원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전달하며, 이에 따라 출원보상 및 유보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출원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 전원에게 표창과 함께 등록보상을 지급하며, 이때 표창은 추후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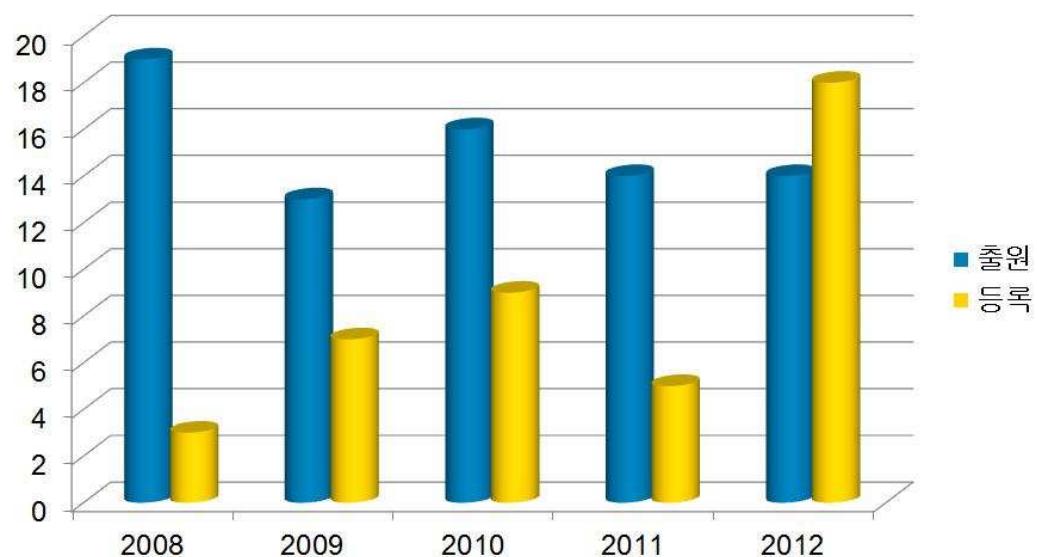
이후, 실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실시보상 안내 후 실시보상 신청 특허에 대해 직무발명 심의를 통하여, 실시보상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 제도 운영활용 및 실적

- 연도별 출원 및 등록 운영실적

▶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원	특허	9	8	11	10
	실용신안	3	0	1	0
	디자인	0	1	1	3
	상표	7	4	3	1
	합계	19	13	16	14
등록	특허	3	2	7	3
	실용신안	0	0	1	0
	디자인	0	0	1	1
	상표	0	5	0	1
	합계	3	7	9	5



• 보상실적

- 최근 5년{계상기간 : 2008.09.01 ~ 2013.08.31} 동안
- 총 63건(상표 제외)의 발명에 대해
- 출원보상 51건 9,300,000원
- 등록보상 41건 37,550,000원 및 등록표창 180회
- 실시보상 3건 4회 34,440,000원을 포함하여,
- 총 81,290,000원의 직무발명 보상을 하였습니다.

• 특허교육 실적[최근 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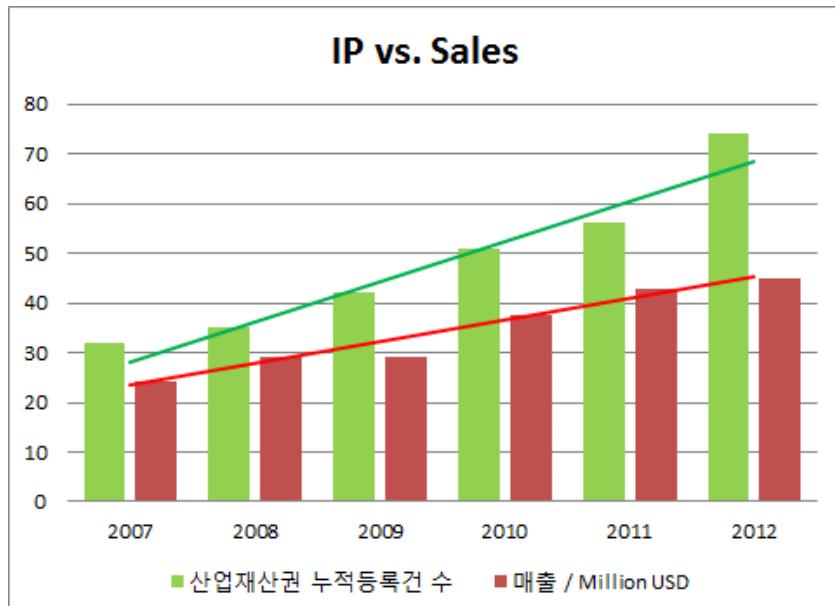
우리 회사는 관련교육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으며, 전사적으로 ‘지식재산권 기초’, ‘특허공보의 이해 및 특허정보 검색’, ‘명세서 작성’등의 기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수시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성과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인력에 관한 교육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IP Academy site 를 이용한 on-line 교육과, IP Campus site를 이용한 off-line 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석사학위 과정의 지원도 이루어져 전담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 회사의 설립과 함께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한 우리사는 제도 운영의 효과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아래와 같이 누적산업재산권 등록수의 증가는 매출의 증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연도별 등록 산업재산권 누적 및 매출 증대표



- 2007년 약 24(백만 달러)의 매출은 2008년 21%성장,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1% 성장, 2010년에는 29%성장, 2011년에는 14%의 성장, 2012년에는 5%의 성장을 보이는 등 연 평균 14%의 꾸준한 매출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등록의 경우 2007년 까지 누적 32건 이었으며, 2008년에는 9.4% 성장한 35건, 2009년에는 20%, 2010년에는 21.4%, 2011년에는 9.8%, 2012년에는 32.1% 등 연 평균 18.6%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 우수 직무발명 사례

A. 등록특허 10-661538호 “고청정시료채취를 위한 복합프로브용 시료채취구”

- 기술내용 및 효과 : 본 발명은 용융금속의 시료를 효과적으로 채취(sampling) 하기 위한 복합센서(프로브)에 관한 발명입니다. 용융금속(쇳물)의 정보를 모르고는 좋은 금속을 만들 수는 없으며, 공정내에서 쇳물의 온도와 성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은 제품 품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래의 스테인리스 공정(특히, AOD 환원탈황 단계 – 8단계)에서 시료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처리 중인 로(furnace)를 정지하여 경동(tilting)시킨 후

긴 막대형 스푼으로 용융금속을 채취하였습니다.

당시, 타 공정에서는 자동장비를 사용한 복합프로브를 이용하여 온도, 시료채취 등을 하였지만, 본 스테인리스 공정에서는 용융금속내의 찌꺼기(slag)로 인해 자동 채취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브내에 필터 및 새로운 시료채취구(용기)를 활용한 본 발명을 통해 자동설비 및 복합프로브를 이용한 시료채취가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사에게는 높은 기술력의 완성과 매출증대, 고객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성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매출증대** : 본 발명에 의한 신규제품의 판매로 인해 2007년부터 연간 약 2.5억원의 국내 신규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등록5년차 실시보상 산정 시(2007년 ~ 2011년) 약 12.5억 원의 매출 효과와 실시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1,583만원을 발명자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 **기타효과** : 본 발명과 시스템 적용의 성공이후, 대기업(고객)과 우리사 (우진일렉트로 나이트(주))는 성과공유제를 통한 상생협력의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공동 개발의 노력과 실용화를 위한 새로운 동기부여와 신뢰형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직원들의 즐거운 도적정신과 사기진작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B. 등록특허 10-870569호 “용융금속의 중-고탄 영역 측정용 서브랜스 복합프로브”

- **기술내용 및 효과** : 철강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급 자동차 강판 혹은 API 강재와 같이 고순도의 강 생산기술에는 여러 침예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용강 처리 중 순도의 정확한 측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강공장 중 전로공정은 모델조업을 실시하는데, 통상 Double Slag 조업이라 일컫는 새로운 모델조업방법에는 종래의 센서가 사용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즉, 종래의 센서(복합프로브)와 측정장치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센서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측정장치, 설비, 제어장치 까지 많은 개발 인력과 비용 그리고, 도입 시간이 초래되는 상황 있었습니다. 본 발명의 새로운 ‘옹고온도’ 평가에 의한 탄소성분 측정 방법은 종래의 모델조업에도 사용가능하면서, 신규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한 복합프로브를 제공함으로써, On-line 으로 탄소[C]성분의 확보가 가능하였습니다.

본 발명의 효과로 고객사에서는 전로 Double Slag 모델 조업을 실현할 수 있었고, 전로종점(용강 재공품) 탄소 성분 적중률이 향상되어 합금철 및 부원료 투입량도 저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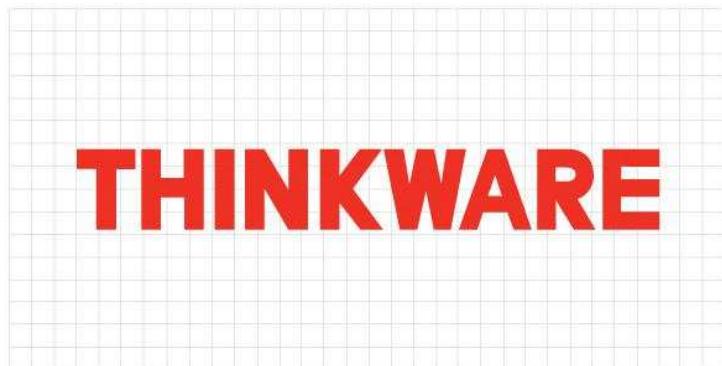
- **매출증대** : 본 발명에 의한 프로브의 확대적용으로, 2007년 약 3억 원의 매출 증대 및 2007년 ~ 2012년 까지 평균 3.6억 원의 매출 증대로, 약 22억원의 매출 효과를 얻었으며, 2009년 실시 2년차 보상금 788만원과 2012년 실시 5년차 940만원을 각각 지급하여, 총 1,72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C. 퇴사자 까지 고려하는 발명가 중심의 직무발명보상

- 등록특허 10-1081372 “충격센서 특성분석장치 및 이를 용한 충격센서 감도 보정 방법”은 2009.12월 출원하여 2011년 11월 등록된 발명입니다. 본 발명의 발명자는 2011년 4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11월 등록 당시 우리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직무발명 담당 부서에서 직접 퇴사한 발명자의 자택인근을 방문하여 등록보상비를 전달하였습니다.
- 또한, 등록특허 10-661538호 “고정정시료채취를 위한 복합프로브용 시료채취구”의 발명자 중 이 모씨는 2007년 2월 퇴사하여 이직하였으며, 실시보상 5년차인 2011년 실시보상금의 전달을 위하여, 이직한 회사를 직접 방문기도 하였습니다.
- 이처럼 우리 사는 발명의 발명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며, 발명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함께한 인재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팅크웨어(주)

가. 기업 개요



- 상 호 : 텁크웨어 주식회사(Thinkware Systems Corporation)
- 대표이사 : 이홍복
- 설립 일 : 1997.03.26. (상장일 : 2006.05.19.)
- 임직원수 : 496명(2013.06.30. 기준)
- 본 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팩스 A동 9층
- 브 랜 드 :
- 사업영역 : Navigation
 - Black Box
 - Tablet PC
 - LBS(위치기반서비스)
- 주요연혁 : 1997 – 텁크웨어(주) 설립
 - 1999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화 성공(이동통신 서비스)
 - 2000 – 국내최초 PDA기반 통신형 내비게이션 SW출시
 - 2003 – 휴대폰 기반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폰’ 출시
 - 2005 – 휴대폰용 내비게이션 SW ‘아이나비 On’ 오픈
 - 2006 – 코스닥 상장
 - 2007 – 벤처 1000억 클럽 가입 및 50대 고속성장기업 선정

- 2008 - 국내최초 Real 3D내비게이션 '아이나비 K2' 출시
- 2009 - 쌍용자동차 내비게이션 SW공급
- 2010 -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아이나비 3D'SW 기본탑재
- 2011 - 국내최초 안드로이드OS 기반 SMART 내비게이션 'K9'출시
- 2012 - 이홍복 대표이사 취임
- 2012 - 현대모비스/모비딕(독일AVN업체) 내비게이션 S/W공급
- 2013 - 10.1인치 퀄드코어 태블릿 '아이나비Tab 콰트로' 출시
- 2013 - 터키정부와 태블릿 PC공급계약 체결
- 2013 - 본사 판교이전 / '프리미엄 스토어' 1호 인천점 open

나. 주요 제품

팅크웨어(주)(대표 : 이홍복)는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전문 기업으로 첨단 IT 기술을 차량 생활에 적용한 '스마트 카 라이프(Smart Car Life)'를 지향하는 업체입니다.

팅크웨어(주)는 창사 이래 국내 최초로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내비게이션 업계를 선도해 왔으며, 차량용 블랙박스,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개인보안 서비스 등 위치기반 서비스(LBS) 사업부문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3D전자지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내비게이션 등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텁크웨어 대표 제품 소개



아이나비 MACH2^{AIR}

"아이나비 MACH2^{AIR}" 제품은 모든 지도를 뛰어 넘는 디테일과 정확성을 자랑하는 실제 하늘에서 촬영한 위성사진을 탑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파생어, 동의어는 물론 유의어 까지 200만건 이상의 명령어를 인식하는 스마트한 음성인식 기능을 채용하여 안전한 드라이빙은 물론 멀티미디어 까지 목소리 만으로 제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이나비 CUBE

“아이나비 CUBE”제품은 아이나비 최초의 셋탑형 내비게이션으로써 국내/외 다양한 차종과의 연동장착 및 매립상황에 최적화되어 개발된 제품입니다. 리얼한 3D지도 외에도 실제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위성지도를 장착하여 실제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CUBE
Dual Save(이중 녹화)기능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외부 충격에 의한 녹화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었으며, 전방 FULL HD/후방 고화질 HD지원으로 전/후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선명하게 녹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나비 FXD900^{마하}” 제품은



아이나비 FXD900^{마하}



아이나비Tab Quattro

“아이나비 Tab Quattro” 제품은 “스마트 스쿨” 솔루션과의 완벽 호환으로 스마트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아이나비Tab”제품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정부기관 및 여러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 제도 도입 배경과 현황

- 텅크웨어(주)는 R&D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출원에 대한 중요성을 전체 임직원에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인센티브 제도”를 2003년 10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7년 7월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공식적으로 제정하여 텅크웨어(주) 임직원 이라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중에 있으며, 이후 발명자들이 지적재산권 출원에 따른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시점으로 1000여건(프로그램 및 저작권 제외)이상에 달하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텅크웨어(주)가 1997년 창사 이래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며 고속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라. 제도 운영활용 및 실적

• 특허 전담부의 운영

팅크웨어(주)의 특허 전담조직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도입한 “팅크웨어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Tips)”을 이용, 1000여건에 이르는 지적재산권들의 관리와 함께, 라이센싱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내 및 해외 특허출원 현황

팅크웨어(주)는 1997년 창사 이래 항상 업계 1위의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급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인 R&D투자의 결과물로써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팀크웨어(주)에서 보유한 지적재산권들을 살펴보면 국내/해외 건을 합한 기준으로 총 1,000여건(프로그램 287건/저작권305건 제외)을 출원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00여건 이상이 등록된 상태로써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분	출원(미공개)	심사중	공개	거절 및 포기	등록	합계
특허권	76	20	28	66	276	466
상표권	3	3	0	19	59	84
디자인권	9	2	0	16	88	115
실용신안권	0	0	0	5	6	11
프로그램	0	0	0	0	287	287
저작권	0	0	0	0	305	305
합계	88	25	28	106	429	1,268

국가	PCT	일본	유럽	미국	중국	호주
특허권	143	11	47	56	44	24
합계	325건					

- 보상실적

팅크웨어(주)는 발명자들로부터 ‘직무발명제안서’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발명제안을 접수한 후 각 부분장이 판단하는 기술성, 시장성 및 특허성 점수에 따라 A, B, C 및 D등의 등급을 결정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발명자(제안자)에게 보상금이 주어지게 되는데, A등급의 경우 100만원, B등급은 70만원 및 C등급은 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D등급의 경우 출원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디자인실을 보유하고 있는 텁크웨어(주)는 디자인실 소속 직원들에게 우수디자인 창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디자인건의 경우 선행디자인이 없을 경우 출원을 진행하며, 이 경우 1건의 디자인 출원에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및 저작권 제외

(2010.08 이후)

년도	2010	2011	2012	~2013.08	합계
건수	35건	60건	57건	35건	187건
금액	20,600,000원	17,491,405원	15,128,327원	20,080,000원	73,299,732원

라.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팅크웨어(주)는 연구원들이 적극적인 발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함께 해당 업계의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창사이후 단기간에 1000억 매출 달성 및 50대 급성장 벤처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맙거름이 되었으며, 이 후에도 동일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대기업 사이에서도 업계 1위를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 보유로 인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적재산권 침해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 우수 직무발명 사례

팅크웨어(주)는 창사 이래 1000여 건(국내/해외)이 넘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으며, 아울러 연구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기적으로 개선된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출원평가에 의해 결정된 등급별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연구원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가운데 그 결과물로 나타난 뛰어한 지적재산권들은 제품에 적용하여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항공 사진 기반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영상 처리 시스템 및 방법” [10-2012-0111370]

대표적으로, 최근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아이나비 K11’의 경우, 항공 데이터를 탑재함으로써 드라이빙의 모든 경로를 항공사진화 하여 제공하여 제공하는 특허권이 적용된 제품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실제 지도를 보며 드라이빙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입니다.

바. 신규 수익 창출원의 탄생

팅크웨어(주)는 1997년 창사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이에 따른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화 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바탕으로 동종업계 부동의 1위 기업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출원제도와 합리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2013년에는 텁크웨어(주)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일부를 A社와 *차례의 실시권 및 매각 계약을 맺었으며 이로 인해 거액의 금전적 수익(1차 :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으로 **억원 / 2차 특허권 일부 매매 및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으로 **억원의 순수익이 발생)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텅크웨어(주)의 “직무발명보상제도”하에 출원된 우수한 지적재산권들이 존재하였기에 가능한 일 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텅크웨어(주)의 앞선 기술력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높일 수 있는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및 판매 외에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신규 수익원 창출의 예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주)골프존

가. 기업 개요



- 본사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13 (탑립동 898)
- 홈페이지 : <http://company.golfzon.com/main/main.asp>
- 설립일 : 2000년 5월 8일
- 대표이사 : 김영찬, 김원일
- 주생산품 : Golf Simulator (Golfzon Real, Golfzon VISION)
Golfzon Academy (Golfzon Driving range)
- 직무발명 제도 도입 연도 : 2009년
- 주요 연혁
 - 2000.05 : (주)골프존 법인 설립
 - 2002.05 : 골프시뮬레이터 GOLFZON-P, GOLFZON-P+모델 출시
 - 2003.12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 2004.10 : GOLFZON-S 모델 출시

2006.02 : 제1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6.09 : GOLFZON LIVE TOURNAMENT 서비스 런칭
2007.03 : 제2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7.10 : GOLFZON LIVE 나스모 서비스 런칭
2008.01 : GOLFZON-N 모델 출시
2008.06 :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식경제부)
2008.12 : 제1회 가상 특허 분쟁 시뮬레이션 경진대회 최우수상
(특허청장상)
2009.02 : 고용 우수 중소기업 선정(노동부장관상 수상)
2009.09 : 2009 우수상표권 공모전 특별상(대전광역시장상)
2009.10 : 벤처기업대상 석탑산업훈장
2009.12 : 2009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 금상(지식경제부장관상)
2011.01 : GOLFZON Real 출시
2011.04 : GOLFZON GDR 런칭
2012.02 : GOLFZON VISION 출시
2012.03 : GTOUR (스크린 프로골프 투어) 런칭
2012.05 : 가족친화 경영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2012.08 : 2012 SNS 대상 문화레저스포츠 부문 대상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
2012.12 : 2012 대한민국 기술대상 은상(지식경제부장관상)

나.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

1. Golf Simulator – Golfzon Real

Golfzon Real은 IR(적외선) 센서 기반 골프 시뮬레이터 제품입니다.

골프존의 골프 시뮬레이터는 국내외 실제 골프코스를 3D 그래픽으로 재현하고, 사용자가 클럽을 사용하여 실제 공을 타격 시 센서를 통하여 물리적 속성값(공의 속도, 방향, 회전 등)을 추출하고, 물리 엔진과 가상현실 그래픽 엔진을 이용하여 3D 가상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골프 시뮬레이터는 이용자들의 경기 기록 (평균비거리, 퍼팅수, 전국 랭킹, 경기결과 분석 등) 및 스윙모션 등의 데이터를 당사의 온라인 포털(www.golfzon.com)에 전송하며, 각각의 이용자는 골프존 온라인 포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lf Simulator – Golfzon Real

2. Golf Simulator – Golfzon VISION

Golfzon VISION은 Vision(카메라) 센서기반 골프 시뮬레이터 제품입니다.

골프 시뮬레이터 Golfzon VISION은 Vision(카메라)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Golfzon Real 기능에 더하여, 임팩트 존, 클럽패스, 클럽 페이스, 볼 스피드, 볼 스피드, 발사각 정보 등 정교한 샷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 결과는 골프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Golfzon VISION은 타격 매트 어디서나 자유롭게 볼을 감지할 수 있어 빠른 볼 인식으로 속도감 있는 라운딩이 가능하며, 페어웨이, 러프, 그린 병커 3종 매트를 통해 필드의 상태를 구현하여 더욱 생동감 있는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Golf Simulator – Golfzon VISION

3. Golfzon Academy – Golfzon Driving Range(GDR)

Golfzon Driving Range는 필드의 현장감을 느끼면서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IT기술이 접목하여 제작된 골프 레슨 시뮬레이터 제품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해 Vision(카메라) 센서, 전/후방 카메라, 스윙 플레이트, RFID 클립인식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용자의 연습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전송(academy.golfzon.com)하여, 레슨 후 이용자는 Golfzon Academy Web/Mobile에서 연습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lfzon Academy – Golfzon Driving Range

다.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영

1. 특허전담부서 설립

골프존은 2008년 지식재산권 전담인력 채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허 경영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5월에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Patent Mission과 Patent Vision를 수립하여 양질 및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GOLFZON Patent Mission &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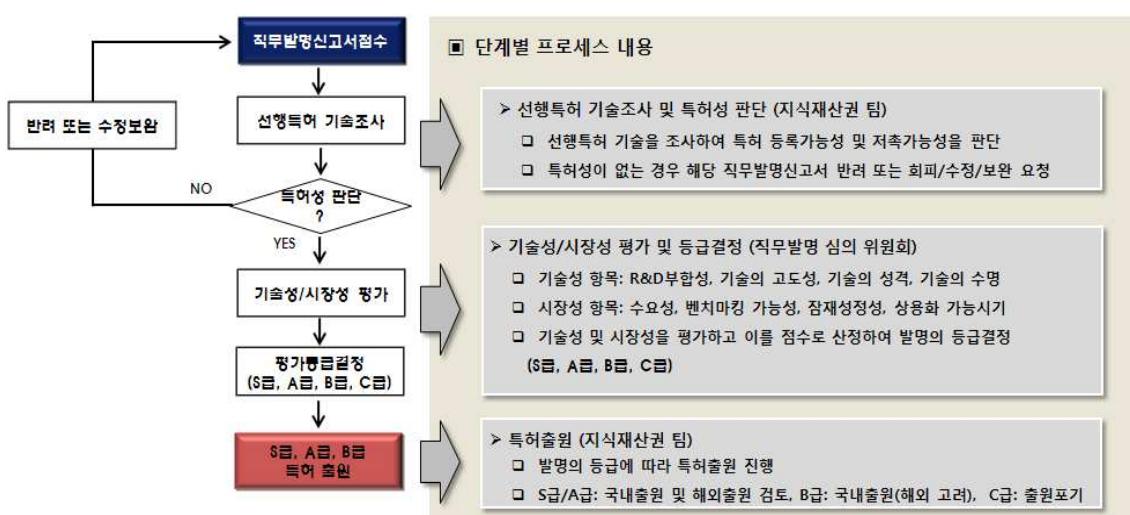
2011년에는 독립된 지식재산권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공격적인 R&D 투자를 기분으로 H/W, S/W 및 각종 UI에서의 상용화 및 미래기술 등의 특허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십분 활용한 결과, 임직원들의 직무발명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대외 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지원센터 등)과의 지속 협력 활동을 통해 특허 침해 등의 분쟁 대응을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 내에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체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지식재산 경영 체제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2. 직무발명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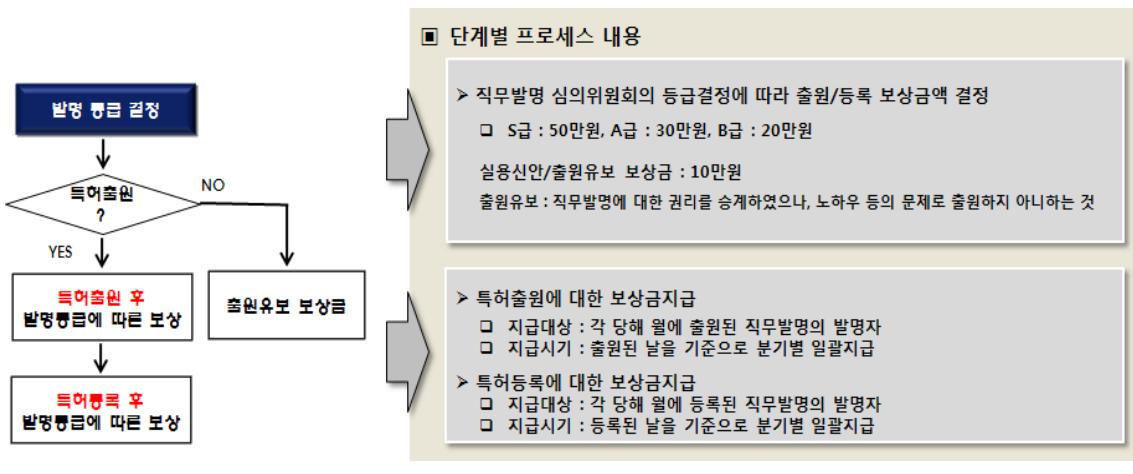
직무발명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은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발명의 등급을 책정하여 책정된 발명의 등급에 따라 국내외 출원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제도 평가 운영 프로세스

또한 직무발명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을 통해 책정된 직무발명의 등급을 기초로 국내외 ‘출원’, ‘등록’, 및 ‘출원유보’ 보상금으로 구분하여 해당 발명자들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직무발명으로 탁월한 성과(‘실시 및 처분’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등)를 이룰 경우 별도의 상별규정을 통하여 특별포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발명 및 제안에 대한 동기 부여와 발명

의욕 고취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제도 보상 운영 프로세스

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골프존은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임직원의 특허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국내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식재산권 강화라는 경영정책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기반을 마련하였고 동년에 직무발명 규정을 도입하면서 지식재산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국내 특허 출원은 기존보다 50% 증가하여 매년 30여건 내외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해외 특허는 2010년 이후 내년 30~50여건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골프존 특허 출원 현황



연도별 골프존 특허 등록 현황

이러한 결과로 골프존은 현재까지(2013.09.30 기준) 국내특허출원 150건, 국내특허등록 113건, 해외특허출원 155건, 해외특허등록 7건의 실적을 보유하였고, 기타 실용신안, 디자인은 각 4건, 5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래 확보기술 및 핵심기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순히 지식재산권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골프존 직무발명의 출원 및 등록실적

구 분	출원 (2013.09.30 기준)			등록 (2013.09.30 기준)		
	국내(건)	해외(건)	계(건)	국내(건)	해외(건)	계(건)
특 허	150	155	305	113	7	120
실용신안	4	0	4	4	0	4
디 자 인	17	2	19	5	0	5
계	171	157	328	122	7	129

마. 특허교육 실적 및 특허 창출 활동

골프존에서는 전사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지식재산권 의식을 고취시켜 자사의 제품과 관련 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및 계량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내 교육 뿐만 아니라 외부 변리사와 협업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 시행 교육,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의 개요 및 사례, 아이디어 도출방법, 특허정보검색 교육, 소송/분쟁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발명 평가/보상제도 교육을 통하여 직무발명의 개념부터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까지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임직원들과 소통하며 이해시켰으며, 당사 소송/분쟁 발생시 대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송/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연구 및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GOLFZON

세상에 없던 골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골프존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대상**
신규사업 혹은 특허발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은 골프존 및 자회사 임직원
- **지원분야**
신규사업 혹은 특허발명 아이디어 (중복 신청 가능)
- **지원방법**
이메일 접수 (iday@golfzon.com)
- **시상규모**
각 분야 대상 1명 1백만원, 2등 1명 50만원, 3등 3명 각 30만원

● **GOLFZON 'I' DAY** 공모전 일정

항목/순서	기간	내용
접수	9/13 ~ 10/11	전사 공지 및 아이디어 접수
1차 심사	10/14 ~ 10/23	1차 심사 - 신규사업 IDEA: 임직원 온라인 평가 - 특허발명 IDEA: 지재팀 특허성 평가
1차 결과 발표	10/24 ~ 10/25	1차 결과 발표
2차 심사	10/28 ~ 11/08	2차 심사 - 신규사업(사업성 평가) - 특허발명(사업성 + 기술성 평가)
최종 발표	11월	11월 경영설명회 시, 시상

2013 골프존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골프존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매년 전사 차원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상상 컨트리클럽)’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접수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특허성, 기술성 및 사업성을 심사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선별된 우수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골프존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 – 상상 컨트리 클럽

바.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규정

골프존은 2009년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하면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도출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하여 국내외 출원 및 등록 등에 대한 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출원, 등록, 출원유보 보상금으로 구분되며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 특허 출원/등록 보상금

평가등급	총점	보상금액	처리
S급	90점 이상 ~ 100점 이하	50만원	국내출원진행 해외출원진행
A급	80점 이상 ~ 90점 미만	30만원	
B급	60점 이상 ~ 80점 미만	20만원	국내출원진행 해외출원고려
C급	60점 미만	출원포기	

- 국내특허출원/등록, 해외특허출원/등록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경우 국내/해외 출원보상금 100,000원 지급
- 출원유보보상금의 경우 출원보상금 100,000원 지급
- 국내외 출원된 날을 기준으로 분기별 일괄 지급
- 국내외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분기별 일괄 지급

사.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1.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2013년 6월까지 약 7,700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시행 이전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골프존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실적 – 2013년 6월 기준

2. 직무발명 우수 사례

골프 시뮬레이터는 실제와 최대한 가까운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타구에 대한 정확한 센싱기술이 요구되므로, 당사는 타구의 정확한 센싱을 위해 고속의 물체(타격된 공)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센싱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카메라 센싱 기술은 저사양 카메라를 통해서도 특수한 마킹 표시 없이 고속 (최고속도 : 100m/s, 최고높이각 : 70도 등)으로 움직이는 물체(볼, 클럽 등)를 인지할 수 있는 기술로써, 타석 감지 영역(샷 인식/클럽 인식)과 볼 감지 영역을 분리하여 타석 주위의 영상간섭으로 인한 오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공의 속도, 탄도, 발사각 뿐만 아니라 클럽헤드 스피드, 클럽 페이스각도, 클럽패스 등을 정확히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카메라 센싱 기술이 적용된 Golfzon VISION 제품 구성도

이러한 카메라 센싱 기술에 대하여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통해 접수된 13건의 직무발명을 특허출원으로 진행하여 특허권(등록특허 10-1078975외 12건)을 획득하였으며, 이중 특히 중요한 특허에 대해서는 PCT 출원을 통하여 주요 해외사업국가(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에 출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통하여 카메라 센싱 기술이 적용된 당사 골프 시뮬레이터

(GOLFZON VISION) 제품을 안정적으로 론칭(launching)할 수 있었고, 카메라 센싱 기술을 이용한 경쟁사의 출현으로 자칫 매출 감소를 야기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유지하며 신규 매출 창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제품 출시로 해당 발명자들에게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별도의 시상을 하여 전사적으로 발명 및 제안에 대한 동기 부여와 발명 의욕 고취시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골프존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을 통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매출의 증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1. 대내외 경쟁력 강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을 통하여 과거 소수의 임직원에 집중되어 제안된 직무발명이 점차 전체 임직원으로 확산되었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직무발명을 특허로 연계하여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기술보호는 물론 지속적인 시장선점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확보된 지식재산권들에 의해, 당사는 대내외적으로 시장 경쟁력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높은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 매출의 변화

골프존의 제품군은 골프 시뮬레이터를 중심으로 카메라 센싱기술, 그래픽 렌더링 기술, 3D영상기술 등 기술집약적인 제품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제품들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에 의해 확보된 지식재산권을 통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R&D 기술 개발에 의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년 매출성장이 지속 되었으며, 2011년에는 2,000억 대 매출을 달성하였고, 2012년에는 카메라 센싱 관련 특허기술이 적용된 GOLFZON VISION 제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판매 호조에 따라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30%(2011년 2,098억원 > 2012년 2,763억원)의 매출 신장을 달성하였습니다.



골프존 매출 신장도 (단위 : 억원)

이러한 매출 신장의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제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제안되었고,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여 시장선점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골프존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가치와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프라웨어

가. 기업개요

- 본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10길 26 반도빌딩 403호
- 홈페이지 : <http://www.infraware.co.kr/>
- 설립일 : 1997년 04월 07일
- 대표이사 : 강관희 / 곽민철 공동대표
- 주생산품 : 모바일 오피스
-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 연도 : 2006년
- 주요연혁

1997.04 (주) 인프라웨어 설립

1999.07 (주) 중소기업청 인증 벤처기업등록

2005.10 코스닥 상장

2007.10 美, 포브스지 "Forbes Asia 200 Best Under A Billion" 선정

2008.11 모바일 기술대상수상(POLARIS Email)

2008.11 신SW 상품대상수상(POLARIS Email)

2008.12 특허분쟁경진대회 “진흥회장상” 수상

2009.02 (주) 보라테크 경영권 인수

2009.09 美, 포브스지 "Forbes Asia 200 Best Under A Billion" 선정

2010.08 (주)조이모아 경영권 인수

2010.11 KWAC/WBS 과제 주관사 선정

2010.11 모바일 기술대상 수상(POLARIS Office)

2010.11 신SW 상품대상수상(POLARIS Office)

2010.11 (주) 쉬프트웍스 경영권 인수

2010.12 (주) 보라테크 합병

2011.05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수상(POLARIS Office)

2011.06 WBS 과제 주관사 선정(스마트 TV)

2011.11 (주) 디오텍 경영권 인수

2011.11 특허경여상 수상

2012.04 인프라웨어 북스 설립

인프라웨어는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1997년 창업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성장하고 있는 SW 전문 기업입니다.

자체 기술인 오피스 엔진 기술을 근간으로 한 모바일 오피스/이메일 솔루션, 인터랙티브 전자책/스마트 러닝 솔루션 사업, 필기 및 음성 인식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크로스 플랫폼 기술, 그리고 모바일 게임 및 서비스 사업까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더 스마트한 삶, 컨텐츠가 풍부한 삶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

인프라웨어는 계열사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오피스 사업을 중심으로, 필기/음성인식 기능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보안 솔루션, 모바일 게임 사업까지. 지금도 인프라웨어는 다양한 분야로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OLARIS® Office

Enabling Smart Work! POLARIS Office



POLARIS Office

POLARIS Office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만들어진 가장 쉽고 강력한 오피스 제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Microsoft Word, Excel, PowerPoint, PDF 등 다양한 문서를 몇 번의 탭으로 쉽게 작성하고, 데이터를 빠르게 정리하고,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펜을 사용하여 문서를 바로 작성하거나 문서 위에 검토 의견을 남기고 여러 사람과 함께 문서를 실시간으로 보는 기능은 진정한 Smart Work를 가능하게 합니다.

POLARIS® Viewer

문서 원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바일 Viewer



문서 원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바일 Viewer.

POLARIS Viewer는 모바일 기기를 위해 디자인된 가장 쉽고 강력한 오피스 뷰어 제품입니다.

PC환경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을 모바일 환경에서 빠르게 열람하고 어디서나 멋지게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POLARIS® Office Enterprise

강력한 문서 보안 오피스! *POLARIS Office Enterprise*



강력한 문서 보안 오피스.

POLARIS Office Enterprise는 모바일 생산성 향상과 문서 보안을 위한 최상의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입니다. 탁월한 열람 성능과 강력한 편집 기능을 기반으로, 기업의 문서 보안을 위해 문서 저장과 차리에 있어 차별화 된 암호화 기술과 보안 기술을 적용, 안전하게 업무용 문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OLARIS Office Enterprise는 완제품 형태뿐 아니라 기업 내 시스템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SDK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POLARIS® Email

Rich Email Environment



POLARIS Email은 자유로운 열람, 다양한 편집, 쉽고 편리한 정보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Email 솔루션입니다. 보다 쉽고 빠르게 메일을 보고 감성을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Rich Mail Environment를 제공하여, 일반 유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편의 기능부터 고급 유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중 폴더 관리 및 사용자 Rule 정의 기능 등을 지원하여 사용자들에게 더욱 신뢰성 있는 Email 환경을 제공합니다.

POLARIS® Browser

Experience Best Web Browsing Experience



POLARIS Browser는 Ubiquitous 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최고의 웹 브라우징 경험을 제공하는 Webkit 기반 모바일 브라우저 솔루션입니다. Page Panning 및 Zooming 기능 등을 통해 가볍고 빠른 모바일 웹브라우징이 가능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비주얼 효과 등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감성에 대한 요구를 모두 충족 시킵니다.

POLARIS® VGuard

가볍고 빠르며 정확한 바이러스 감지!



POLARIS VGuard는 가볍고, 빠르고, 정확한 바이러스 탐지 솔루션으로 수 많은 은행, 증권 파트너사에 사용되며 그 안전성을 검증 받은 백신입니다. 기존 백신의 변종 탐지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적은 수의 패턴으로도 기존의 악성코드는 물론이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악성코드까지도 검출 가능한 지능형 검색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2.0엔진의 적용으로 경량화된 패턴DB, 바른 업데이트, 더욱 향상된 검사 속도, 악성코드 변증에 대한 높은 탐지율, 강력해진 권한 상승 기법 등 높은 성능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POLARIS® Smartphone Suite

Android Anywhere!



PSS(POLARIS Smartphone Suite)는 Android가 아닌 디바이스에서 Android Application과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미들웨어 솔루션으로, 낮은 스펙의 디바이스에서도 Android 환경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솔루션입니다. PSS는 점점 다양해지는 디바이스 및 플랫폼 영역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양의 콘텐츠를 수급할 수 있는 미들웨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POLARIS® App Inspector

Secure Your Android Apps



POLARIS App inspector 솔루션은 Android Application(APK)를 분석하여, 바이러스, 악성 코드, 정보 유출과 같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앱스토어 등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또한 바이러스 검사, 개인 정보 및 주요 정보 유출과 위험 코드의 사용에 대해서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POLARIS® App Verifier

Verify Android Apps Systematically



POLARIS App Verifier 솔루션은 Android Application(APK)의 동작을 분석하여 기능을 확인하고 오류나 오동작이 없는지 검사하는 검증 툴입니다. 검증을 시스템화할 수 있어 사람이 하기 어려운 24시간 테스트, 반복 테스트의 기능을 지원하며, 다수의 단말에서 동시 분석이 가능하여 검증시간의 감소 및 검증자의 업무 효율이 향상됩니다.

POLARIS® App Generator

Easy Way to Port Android to Tizen!



PAG(Polaris App Generator)은 Tizen OS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에서 Android Application을 실행할 수 있도록 Android Application을 Tizen Application으로 변환/제작하는 솔루션으로, 단 시간에 Tizen 앱을 제작하여 신규 앱 개발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솔루션입니다. PAG는 단 기간 Tizen 앱 제작 및 Tizen 생태계의 앱 수요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POLARIS® TV Browser

Browsing Web on TV



POLARIS TV Browser는 웹 표준(HTML5)과 방송용 표준 규격(CE-HTML, OHTV)를 기반으로 다양한 TV용 Application을 제작할 수 있는 TV Browser입니다. 임베디드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어서 다양한 기기에 적용할 수 있으며, IPTV뿐 아니라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에서도 Interactive TV를 지원하는 데이터 방송용 임베디드 솔루션입니다.

POLARIS® TV Middleware

Interactive Digital Broadcasting



POLARIS TV Middleware 1.0은 ACAP, OCAP 및 MHP를 기반으로 하는 양방향 디지털 방송용 Middleware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체 브라우저 솔루션과의 통합 연동을 지원하여 서비스 구축의 효율성, 서비스 운영의 편의성,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극대화한 Solution으로 OIPF, HbbTV 규격을 지원합니다.

POLARIS® TV Widget

Stay Updated on TV



POLARIS TV Widget은 SD/HD 콘텐츠에 최적화된 TV용 Widget 플랫폼(W3C표준)입니다. 스토어 연동이 가능한 브라우저 기반의 POLARIS Widget은 뉴스, 날씨, EPG, 카페/커뮤니티, 홈쇼핑, 미니 게임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한 투명도 조절, Blur, Page Flipping 등 다양한 효과를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다.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영

▶ 제도 도입 배경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하여 임직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우리 기업은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특허 경성의 중요성 의식을 고취하고, 업계 최상위 수준의 특허를 확보하며, 특허 분쟁 및 분석 능력 대응 등의 전략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제도의 실적

인프라웨어 및 전 계열사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된 후 총 438건의 직무발명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362건이 국내/해외에 출원되었으며, 약 90건의 국내/해외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심사 중인 약 70건의 출원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특허 보유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도의 운영활용 및 효과

이상과 같이 많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여 SK텔레콤 WAP Brower Sole Vendor로 선정되어, 경쟁사에 비하여 기술적 우위를 확인하였으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특허출원과 등록특허의 보유는 지식재산권 전담 부서인 법무특허팀을 운영하면서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한 결과이며, R&D와 IP를 연계하여 신기술과 특허를 관리하는 등 기업내부에서 활발한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해온 결과입니다. 또한 2006년 12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였고, 이는 기술축적과 이윤 창출로 이어져 인프라웨어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웨어의 특허경영 노력으로 2008년 ‘특허분쟁 가상 시뮬레이션 경진대회

진흥회장상 수상’, 2011년 ‘특허경영상 수상’, 2013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선정’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특허교육 실적

(주) 인프라웨어는 분기별로 임원/직원 대상 특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및 신규입사자(경력직)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특허전담부서 인력과 인프라웨어와 협력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iPac 아카데미 기업방문교육 및 사내 강사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도 운영의 효과 및 매출의 변화

- 2006년 특허전담부서 신설 후 인프라웨어 매출 112억원에서 2012년 435억원으로 288% 성장
- 2005년 4건의 특허출원에서 2012년 104건으로 증가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제도 신설 후 신규사업기획 및 경쟁사 제품분석 시 직원들의 특허분석능력 향상
- 인프라웨어 및 계열사 임직원 특허 관심도 향상
- 특허는 업무수행에 있어 ‘의무이자 권리’라는 인식 확산

▶ 등록보상금

제3조 (등록보상금) ① 등록보상금은 발명자의 지분에 따라 등록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한다.

② 등록보상금은 등록 1건당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S급 : 특허를 경쟁사가 침해하고 있는 경우, 특허발명을 통해 수익모델이 창출되어 수익이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00만원 이상(실시처분 이익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추가 지급)
2. A급 : 특허기술을 당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상
3. 급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상

▶ 실시/처분보상금

제4조(실시·처분보상금) ①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처분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당해 발명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순이익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종업원이 자유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양도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준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실시·처분보상금은 당해 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 지급하되, 매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출원유보보상금

제5조 (출원유보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의 액수는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 2분의 1의 합으로 한다.

(주)광림

가. 기업개요



- 본사주소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청남로 484
- 홈페이지 : www.kanglim.com
- 설립일 : 1979년 6월 설립
- 대표이사 : 이인우
- 주생산품 : 트럭용크레인, 전기공사분야 특장차, 소방차 및 구난용 특장차, 청소차 등
- 직무발명 도입년도 : 1997년 4월 1일
- 주요연혁 : 1979.06 광림산업(주)설립
1982.07 광림기계(주)설립, 산업용크레인조립시작
1985.10 스웨덴 HIAB-FOCO사와 기술도입 계약체결
1986.08 광림기술연구소 설립
1986.09 철탑산업훈장 수상
1986.10 광림정밀(주)설립
1988.01 방위산업체지정

1988.04 과학의날 대통령 표창수상
 1988.09 청원공장 준공
 1989.03 일본 AICHI사와 제휴
 1992.12 무궁화 육성 모범업체 대통령상 수상
 1993.04 우수중소기업으로 대통령 청원공장 방문
 1997.10 생산전기종ISO 9001 인증획득
 1997.12 광림3개사 광림특장차(주)로 합병
 1999.04 건설기계 사업개시
 2001.12 노면청소장비 우수제품인증(GQ)획득
 2002.06 국방품질시스템 인증획득
 2002.09 중국현지합작회사 “광림특장차 금주유한공사” 설립
 2003.03 (주)광림으로 상호변경
 2005.12 우수방산업체 선정
 2006.09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인증
 2009.12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획득
 2011.12 3천만불 수출탑수상

나. 주요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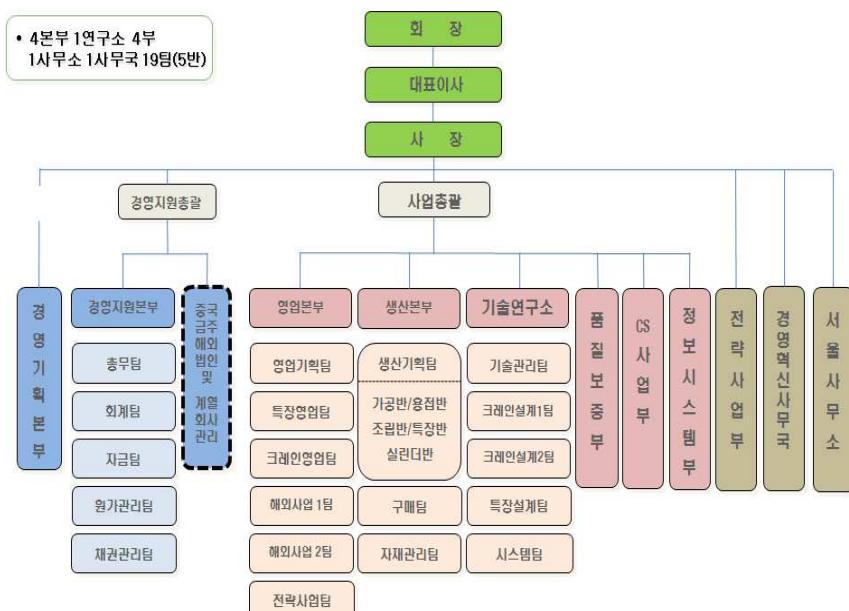
구분	제품	제품특성
크레인 (관절식)		관절식크레인은 재활용업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로서, 강인한 내구성, 뛰어난 작업속도와 작업능력,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고난도 작업조건에서 더욱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구분	제품	제품특성
크레인 (직진식)		직진식크레인은 중량물 작업 시 수행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제작되었고 인양능력, 작업높이와 속도면에서 동급 최대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강인한 내구성 조작의 편의성, 안전성은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고소작업차		전기공사차는 신기술, 신공법으로 대응력을 갖추고 안전성과 조작성을 더욱 강화하여 개발 되었고 작업환경에 있어 안전하고 조작이 편리할 뿐 아니라,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여 다양한 배전 공사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소방차는 기동성과 성능에서 매우 뛰어나며 방수압과 분사량의 최대효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모든 용도와 용량, 기능에 맞게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환경차		환경차 분야에서 선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림이 개발한 환경차는 쓰레기 수거, 노면청소 및 하수구 청소작업등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환경차량의 지속적인 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품	제품특성
방산분야		항공무장장착장비, 탄약트레일러, 관절식 유압크레인 등 각종 탄약, 물자취급 및 수송장비를 개발하여 육·해·공군·미8군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특허전담부서 설립과운영

당사는 기술연구소 기술관리팀 내 겸임인력 1명이 지식재산권 관리를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명의욕 고취 및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지원사업 추진 및 교육활동을 통해 직원의 지식역량을 높이고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대행업체를 통하여 특허권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

2013년 10월 31일 기준

구 분		출 원	등 록	합 계	비 고
국 내	특 허	8	32	40	
	실용신안		1	1	
	디 자 인		4	4	
	상 표		2	2	
해 외	상 표	2		2	
보 유 합 계		10	39	49	

마. 특허교육 실적

당사 임직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사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사 경쟁업체의 산업재산권 동향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산업재산권 이해도를 높여 발명기술 화보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관리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부서별로 특허정보검색 프로그램을 전파하여 활용하였고 보유특허의 권리분석 및 가치평가를 받았습니다.

바.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규정

▶ 등록보상금

현재 운용중인 직무발명 지침에 의거, 2003년 8월 현실적 보상기준 적용 이후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평가하여 결정된 보상등급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종업원에게 당사 기준에 맞게 지급합니다. 단, 별도의 심의 또는 실용신안과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는 등급 기준 없이 확정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등급의 결정

평가점수의 결정은 당사 직무발명평가기준표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를 산출 평가하여 각각 가중치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총점/평가지수=확정평점 (단, 최저와 최고점수 제외)

▶ 보상등급 확정평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점수	80 ~ 100	70 ~ 79	60 ~ 69	50 ~ 59	40 ~ 49	40 미만

▶ 보상금 지급액

등급	특허	실용	디자인
1등급	200만원	20만원	10만원
2등급	150만원		
3등급	100만원		
4등급	80만원		
5등급	60만원		
6등급	50만원		

사.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 직무발명심의회 실시 : 2004년 1월, 첫 실시 후 현재까지 22회 실시

▶ 보상현황

단위 : 만원

실시년도	심의건수	등급	보상금액	비고
2004	2	4,2	230	
2005	2	1,6	250	
2006	1	1	200	
2007	2	4,1	280	
2008	2	2,4	230	
2010	3	2,4,2	380	

실시년도	심의건수	등급	보상금액	비고
2011	9	3, 4, 3, 4, 5, 5, 4, 4, 5	700	
2012	5	4, 2, 4, 4, 3	490	
2013	6	2, 2, 2, 3, 3, 2	800	
합계	32		3,560	

▶ 우수 직무발명사례

1) 특허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권리사용에 대한 통상실시권 실시)

당사의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타사에 통상실시권 허락을 승인함으로써 분쟁소지 차단 및 보유권리의 기술적 활용성 향상과 기술사용료 이익을 가지고 왔습니다.

2) 특허 소방펌프 (무효심판 진행 : 승소결정)

당사의 기술과 동일한 펌프 생산과 기술이 적용된 소방차의 납품을 방지하고자 재산권 침해 행위에 따른 심판을 진행함으로써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원활한 영업 활동 및 회사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마.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 제도운영 효과

직무발명제도 최초도입당시 체계가 잡히지 않아 직원들의 관심이 적었으나 이후 보상금 제도 도입과 보상금 한도상향 조정으로 직원들의 관심에 따른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토대로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허 확보 후 이를 활용하여 조달우수제품지정, 중기청 성능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도 제도 운영을 통해 발명자의 권위를 높이고 진보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매출의변화

보유지적재산권이 적용된 장비는 주로 군 및 관에 납품되고 있고 전체매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약규정과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생산으로 타사에서 기술모방이 불가하며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어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예 : 적용장비 : 특허 집회시위관리용 차벽차량 / 약 1,065백만원 발생/ (최근 3년간) / 경찰청 납품). 현재 확보된 지적재산권을 당사 장비에 지속적으로 적용, 생산하여 향후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플레이오토



가. 기업 개요

- 본사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23 (구로동, 지플러스코오롱디지털타워 14층)
- 홈페이지 : www.playauto.co.kr
- 설립일 : 2005년 10월 21일
- 대표이사 : 김종안
- 주 생산품 : 오픈마켓 통합솔루션(OMP), 쇼핑몰 통합솔루션(ENT)
-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13년 4월
- 주요 연혁

2005.10 플레이오토 법인 설립 (플레이오토 서비스 실시)

2006.06 자본증자 (50백만 ⇌ 200백만)

2006.09 플레이오토 무료갤러리 서비스 실시

2006.09 벤처기업 승인

2007.01 (주)옥션 – (주) 플레이오토 솔루션 제휴

2007.10 플레이오토 무료갤러리 시즌2 서비스 실시

2007.11 (주)SK텔레콤 오픈마켓 시스템 제휴

2008.01 판매랭킹 100위 서비스

2008.02 G마켓업무 협약

2008.05 대한통운 택배연동 서비스

2008.07 딱 쓴 만큼만 내는 “이미지호스팅”서비스 런칭

- 2008.12 사용자편의를 위한 오토갤러리 “오픈갤러리”오픈
- 2009.0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2009.05 모바일플레이오토 OMP런칭
- 2009.06 플레이오토 해외 쇼핑몰 통합 솔루션 “곰푸”런칭
- 2009.08 무료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프리빌” 런칭
- 2009.10 프리빌 솔루션 국세청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획득, 한국정보통신산업
진흥원 표준 인증 통과
- 2009.10 (사)벤처기업협회 정회원 승격
- 2009.10 서울지방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 2009.10 해외판매대행 서비스 런칭
- 2009.11 제4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수상
- 2010.0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획득
- 2010.02 플레이오토 AMP통합솔루션(클라이언트버전)오픈마켓 주문관리 오픈
- 2010.11 소비자만족 대상 전자상거래 솔루션 부문(머니투데이 선정)
- 2010.12 구로구 표창패 기업혁신부문(구로구청장)
- 2011.01 자본증자 (200백만 ⇨ 500백만)
- 2011.01 NHN Business Platform(주) 제휴 체결 (네이버 지식쇼핑, 네이버 체크아웃
연계 서비스 – 네이버 미니샵 서비스 시작)
- 2011.11 벤처기업협회 산업화 기술상 김형섭 이사 수상
- 2011.12 자본금 500백만 ⇨ 1000백만 증자
- 2011.12 네이버 우수대행사 수상
- 2012.04 (주)네이버 오픈마켓형 서비스 샵N 제휴서비스실시
- 2012.05 (주)엔비스타 – 옥션/지마켓 키워드광고 ‘스마트클릭’ 공식광고대행계약체결
- 2012.05 온라인 광고대행서비스 ‘오토애드 (Auto-AD)’ 론칭
- 2012.08 서울특별시 모범납세 기업으로 선정
- 2012.09 미국 구매대행 유에스베이 오픈
- 2013.04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 2013.07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 2013.09 회사이전 (서울시 구로구 222-31 G+코오롱디지털타워 14층)
- 2013.11 EMP 오픈

나. 주요제품

온라인 판매관리의 완전 자동화를 추구하는 (주) 플레이오토 기업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에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인터넷에 등록하고, 주문확인과 상품 배송, 고객관리까지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의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OMP(Open Market PLACE)와 오픈마켓과 종합몰, 전문몰 등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ENT(ENTERPRISE)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솔루션을 서비스하면서 쌓은 기술노하우와 지속된 연구를 바탕으로 그동안 제공하지 못하고 있던 기능을 다수 포함한 최신 솔루션인 EMP를 오픈(2013.11)하였습니다.

새로운 EMP를 만나보세요!

종합쇼핑몰과 오픈마켓의 통합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플레이오토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프리빌’은 ‘무료전자세금계산서’ ‘쉬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모티브로 하여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현재 3만 6천의 기업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프리빌 솔루션 내부 모습

최근 오픈한 구매대행 ‘유에스베이’는 혁신적인 기술로 타 구매대행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다수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이트와의 호환성 문제를 개선하고 구매자가 구매했던 정보를 스크래핑기술로 보관함으로써 구매자에게 전가되던 책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많아, 점점 많은 구매자들이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오픈 초기부터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US-BAY 서비스

다. 특히 전담부서 설립과 운영

(주)플레이오토는 특히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플레이오토는 온라인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련 시장을 개척한 선구 기업으로써, 서비스 시작 초기부터 독보적인 연구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관련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2009.10 기업부설연구소의 승인으로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게 되었으며, 솔루션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솔루션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로 특히 보상에 대한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2013.04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특허출원, 등록에 관한 보상을 진행하고 앞으로의 특허개발을 장려하여 직원의 개발 의욕을 높였습니다.

우수기술에 대한 특허출원과 특허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의 필요성을 느껴 특허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이들은 사내 지식재산권을 담당하여 발명유도 및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라.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회사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전 직원에게 공표함으로써 직원의 발명 의욕을 높이고, 그들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2013.04) 이후 2건의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품화에 성공하여 서비스 향상과 매출 신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의 아이디어의 특허출원 또한 적극 지원하겠다는 회사방침으로 (주)플레이오토의 직무발명은 앞으로도 계속 향상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상품화된 기술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친절한 서비스와 적극적인 업무참여로 매출신장을 이루는 직원들에게도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년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06	3	-	-	-	-	-
2007	-	-	-	-	-	-
2008	-	1	-	-	-	-
2009	-	1	3	-	1	-
2010	1	1	-	3	-	1
2011	-	-	-	-	-	-
2012	5	1	-	-	-	-
2013	2	1	-	-	-	-
총계	11	5	3	3	1	1

(주)플레이오토 지적재산권 현황

마. 특허교육실적

임직원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특허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한달에 한번 있는 전직원 조회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발표하였으며 회사 내부의 특허 출원에 대한 절차와 특허 검색방법, 직원에 아이디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상세적인 지원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회사 고문 변리사와 법무사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문컨설팅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회사내 특허지원 전담팀이 있으며 아이디어나 궁금한점이 있으면 해당직원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특허 전담 변리사를 초청하여 특허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특허분쟁에 관한 교육, 직원과 변리사간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특허에 관한 이해를 도와 직무발명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라.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규정

(주)플레이오토는 별도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은 (주)플레이오토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 국내외 출원/등록 보상금

단위:만 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보상금	100	200	70	100	30	50

▶ 실시보상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금으로써 순수익의 30% 범위내에서 지급.

▶ 출원유보 보상

직무발명 보상 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 포기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전호의 금액을 보상하여야 함.

또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 승급, 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주)플레이오토는 2013.04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보상을 지급하였으며 제도 도입 후에는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위:만원

지급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3.04	900	800	210	300	30	50
2013.05	100	-	-	-	-	-
2013.09	100	-	-	-	-	-
총계	1100	800	210	300	30	50

- 2013.04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보상을 소급적용 하여 진행.

바.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 제도 운영의 효과

직무발명보상제도 진행이후 특허 출원이나 신규 발명에 관한 직원의 접근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실질적인 보상을 명확히 한 규정으로 인하여 직원의 발명의욕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개발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직원의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출원된 기술에 대한 상품화 계획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허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허개발에 적극 지원하는 회사 방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매출의 변화

출원된 특허기술들을 기반으로 신규 솔루션(EMP)을 개발하여 2013.11 오픈하였으며, (주)플레이오토의 기술 노하우와 사용자의 의견,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신규솔루션(EMP)는, 출시 전부터 문의가 빗발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엄청난 매출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관련 기술은 서비스 중에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도입으로 저렴한 수수료, 고품질 서비스로 입소문이 전해져서 구매율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매출이 증대되었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보상제도로 인하여 특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플레이오토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직원의 이해능력이 향상되었고, 이것이 기술의 서비스화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플레이오토의 주요 솔루션은 현재에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직무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직원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고취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넣고 있으며, 매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원스테크넷

가. 기업 개요



- 본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33 판교세븐밸리 1동 7층
- 홈페이지 : www.wins21.co.kr
- 설립일 : 1996년 4월
- 대표이사 : 김대연
- 주요연혁 : 1996. 04 (주)원스테크놀로지 법인설립
2000. 03 회사명 변경 (원스테크놀로지 ⇨ 원스테크넷)
침입탐지시스템 'SNIPER IDS' 출시
2003. 07 침입방지시스템 'SNIPER IPS' 출시
2005. 05 'SNIPER IPS' CC 인증 획득
11 제9회 대한민국 e비지니스 대상 – 산자부 장관상(우수상) 수상
2007. 06 '나우콤'인수, 계열회사로 편입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SNIPER WAF' 출시

- 10 석탄사업 대통령 훈장 – 벤처기업대상
2008. 04 DDoS 대응 시스템 ‘SNIPER DDX’ 출시
- 06 직무발명제도 도입
2009. 02 마이크로소프트(MS)와 보안취약성 정보공유 협약(MAPP)
- 05 ‘NIPER DDX’ CC인증 획득
-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중소기업청, 등급A)
- 11 벤처기업(유형 : 기술평가보증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2010. 03 VoIP전용 방화벽 ‘SNIPER VF’ 출시
- 09 정보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2011. 01 ‘나우콤’과 기업분할로 인한 ‘New 윈스테크넷’ 출범
- 04 좀비PC대응시스템 ‘SNIPER BPS’ 출시
‘SNIPER BPS’ CC 인증 획득
보안제품 3종 (IPS, VoIP 방화벽 등) TTA IPv6 인증 획득
- 05 코스닥 재상장
- 07 DDoS 대응 시스템(스나이퍼 DDX) TTA IPv6 인증 획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2등급 획득(전사범위)
암호화모듈(Sniper Crypto V1.2) 검증필
- 10 일본 SNIPER IPS-10G 수출
공공기관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2012. 02 ISO 9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획득
- 03 ‘SNIPER FW’ CC 인증 획득
- 04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부문 기업 선정(지식경제부)
- 06 WC/월드챔프 (KOTRA)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 12 ‘500만불 수출탑’ 수상
2013. 03 침입방지시스템 ‘SNIPER APTX’ 출시
- 06 ‘SNIPER IPS-G’ CC 인증 획득

나.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

(주)원스테크넷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보안관제, 위협 예경보 서비스, 통합보안에 걸쳐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한 우물을 지켜온 보안전문기업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의 보안을 책임지기 위하여, 네트워크 보안, VoIP 보안, 10G 보안, 웹 보안, 통합보안 제품과 같은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보안솔루션을 토대로 공공기관 관제센터 및 금융권 ISAC등의 다양한 보안관제 경험을 토대로 타사와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네트워크 보안의 NO.1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본, 동남 아시아, 북미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1) 대표 보안 솔루션



SNIPER IPS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침입 행위를 실시간 탐지, 분석 후 비정상으로 판단된 패킷을 차단해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보안기술을 제공하는 고성능 침입방지시스템입니다.

특히, SNIPER IPS는 국내 최초 20G 트래픽 탐지/차단 제품으로, 공공/민수/금융 등 대용량 트래픽을 다루는 실망에서 20G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NIPER DDX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지능화된 DDoS 공격을 최신 차단방법론(NBA 행동 기반+시그니처+자동패턴추출)을 적용하여 차단하는 DDoS 대응 시스템입니다.

GS 인증 및 CC 인증을 획득한 신뢰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7.7 / 3.4 대란 당시 성공적인 방어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2) 관제 서비스

(주)원스테크넷에서 제공하는 보안관제 서비스는 SNIPER iTMS / SNIPER TSMA와 같은 통합보안 시스템을 토대로, 주요 관제 대상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고객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안 시스템 탐지 패턴 최적화 적용 후 탐지, 분석, 대응,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보안 SI / 컨설팅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 및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서비스로 (주)원스테크넷은 국내 네트워크 보안회사로서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안제품 구축 서비스를 수행하여 왔으며 다양한 자체 개발 솔루션, 우수 컨설팅 인력 경쟁력 있는 협력사와 함께 보안 SI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영

(주)원스테크넷은 2008년부터 연구개발본부 내에 지재권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사내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총 3명 전문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발명이 좋은 지재권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사내 IP 생성, 관리 프로세스를 재정비 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보충 및 외부 인력(특허법인) 협력을 통해서 사내 특허 교육 및 컨설팅부터 시작하여, 특허기술 발굴, 특허등록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지식재산권 현황 및 운영효과

(주)원스테크넷은 2008년 이후, 직무발명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지재권 출원/등록 수가 눈에 띄게 증가 되었으며,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부터는 주요 지재권에 대한 해외 출원/등록을 진행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지재권 출원/등록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08년 이전	14	13	2	2	—	—
2009년	2	1	—	—	—	—
2010년	5	2	—	—	—	—
2011년	6	4	—	—	—	—
2012년	10	6	—	—	—	—
2013년	13	5	—	—	2	—

(주)원스테크넷은 직무발명제도를 좀더 실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직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외부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에 대한 기술력 향상 및 품질 강화와 신제품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마. 특허교육 실적

(주)원스테크넷은 지재권 생산 및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 특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임직원의 발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외부 전문 인사(담당 특허법인 및 기관)를 초빙하여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방법 등과 같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재권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특허관련 사업 및 전문 교육/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지재권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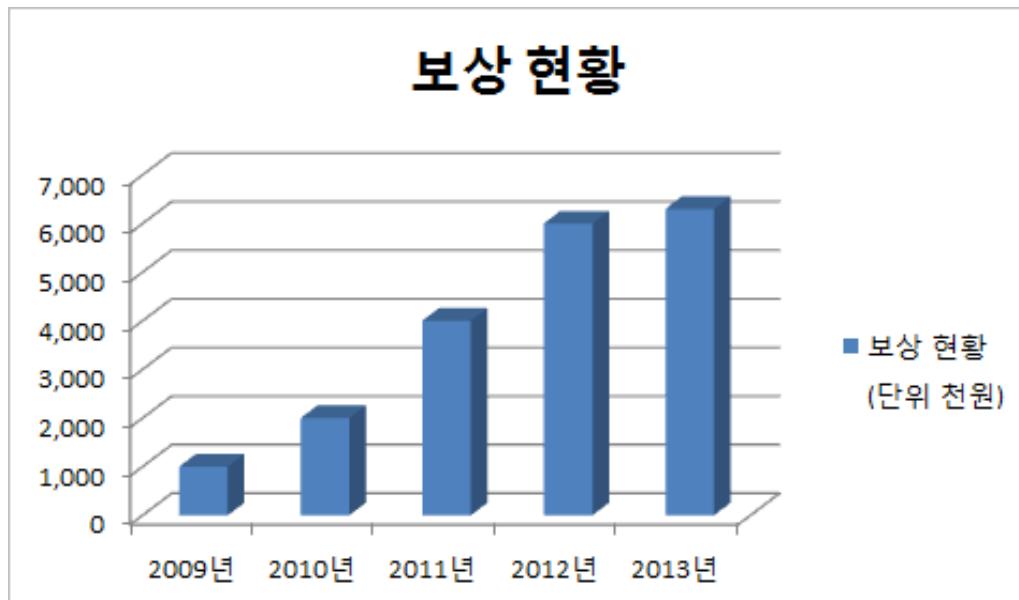
바.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주)원스테크넷은 사내 직무발명제도인 지적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지재권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출원/등록에 대한 포상은 지재권의 종류 및 국내/해외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지재권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국내 지재권 보상금 기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보상금	300,000	150,000	100,000
등록 보상금	1,000,000	500,000	250,000
해외 지재권 보상금 기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보상금	300,000	150,000	100,000
등록 보상금	1,000,000	500,000	250,000

뿐만 아니라, 지재권 출원/등록 시 직무발명으로 인한 실적으로 인정되어 해당 임직원은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 록

직무발명 모델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직위 : 성명 : (인)

발명신고서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발명자	성명	지분(%)	소속	전화번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관련연구과제 및 자금지원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원희망국				
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input type="checkbox"/> 논문발표 <input type="checkbox"/> 학술지 게재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발명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 <input type="checkbox"/> 자유발명			
발명의 현단계	①아이디어단계 ②연구개발진행중 ③연구개발완료 ④시제품제작중 ⑤시제품 테스트결과 기술실현성 입증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사업화 가능분야(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1.		2.	
연구노트의 관리여부 및 소재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본 발명과 관련된 특허				
(특허, 논문, 시장정보) 키워드				
위의 발명을 ○○주식회사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대표)자: (인)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귀증				

[별지 제2호 서식]

양 도 증 (지분 표시)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지분율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타				
양 수 인	성 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발명설명서(명세서) -1

1.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p>【발명의 목적】</p> <p>3.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p> <p>3.2 그 분야 종래기술의 설명 및 문제점</p> <p>3.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발명의 목적)</p>

[별지 제3호 서식]

발 명 설 명 서(명 세 서) -2	
3. 발명(고안) 의 상세한 설명	<p>【발명의 구성】</p> <p>3.4 발명의 구성 및 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나) 기능 및 작용 다) 실시예
4. 특허청구 범위	<p>【발명의 효과】</p> <p>4.1 청구항1</p> <p>4.2 청구항2</p> <p>4.3 청구항3</p>

[별지 제4호 서식]

선행기술 조사서			
제출자 (발명자)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제출일자	
1. 선행기술과의 대비			
기존 특허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본 발명 대비 신규성 (어떤 점이 새로운가?)	본 발명 대비 진보성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2. 관련자료(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기술 요약	참고문헌과 비교시 본발명의 특징	

[별지 제5호 서식]

통지일자	
수령자	직위 : 성명 : (인)

심사결과 통지서

문서(접수)번호	
수신(발명자)	
발명의 명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00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5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직무발명 여부	
2. 회사의 승계 여부	
3. 특허성의 등급결정	
4. 국내외 출원여부	
5. 출원시 심사청구여부	
6. 기타	

20 년 월 일

00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주 소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신청이유]

1. 제5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제15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기 본인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의거

20 년 월 일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
------	---------------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00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신청 이유(요약)	
2. 결정 내용	
20 년 월 일 00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출원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 명칭			
발명자			
<p>00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출원여부 등을 통지합니다.</p>			
권리 내용			
출원 여부			
출원 일자		출원 번호	
미출원 이유			
20 년 월 일 00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			
첨부 : 출원명세서			

Q&A로 알아보는 직무발명제도

❖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 종업원이 할 수 있는 발명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종업원등이 할 수 있는 발명에는 ①직무발명 외에 ②종업원등의 직무와는 무관하지만 사용자등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있는 발명인 ‘업무발명’과 ③종업원등의 직무 및 사용자등의 업무와 무관한 발명인 ‘자유발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발명의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 직무발명의 경우에만 사용자등에게 법정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권리의 예약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무발명제도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종업원등이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가능한 발명의 구분



●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업원등이 완성한 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발명인 것은 아닙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종업원등’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업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공무원도 이에 해당됩니다. 상근과 비상근을 가리지 않으며 임시직원³⁾도 종업원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직무’란 사용자등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상의 임무를 말합니다.

나.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사용자등’이란 일반적으로 회사를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키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업무범위’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범위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넓게 해석하여 사업수행상 직접 관계가 있는 발명은 모두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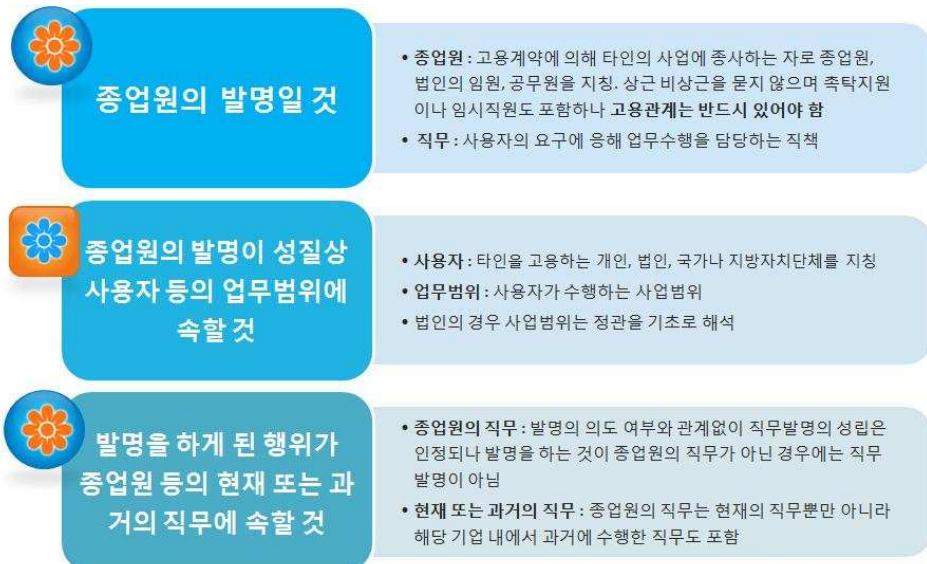
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의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발명은 성립하지만,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등의 직무가 아닌 경우는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예: 일반사무직 직원이 한 발명).

한편,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⁴⁾

3) 이하, 이해를 돋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의상 ‘종업원등’을 ‘직원’으로, ‘사용자등’을 ‘회사’로 표현하겠습니다.

4) 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 판결



◉ 사내창업자가 발명을 한 경우, 원 소속회사의 직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는 X회사이고, 피고는 Y1(회사)과 Y2(개인)이다.
- 피고 Y2는 X회사(원고)에 입사하여 Y1을 창업하였고 현재까지 X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 Y2는 2005년 10월에 X회사의 사내창업규정에 따라 Y1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내창업을 이유로 2005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X회사를 휴직하였다.
- 2006년 3월 22일 Y2는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2009. 03. 11. Y2는 Y1에게 위 특허를 양도하였으며, X회사는 Y1과 Y2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 등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 Y2는 사내창업 휴직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도 산입되지 않으며, X회사는 위 기간 동안 Y2에게 실질적인 지휘 내지 명령권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의 특허는 X회사의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⁵⁾

◎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그 회사와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1)에 입사하기 전에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고안을 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자이고, 공동피고인 Y1은 회사이며 Y2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Y1 회사 및 Y2는 X에게 체인을 코팅하는 기계장치의 제작을 의뢰하고 Y1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다.
- X는 고안을 완성하고 Y1과 공동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X는 Y1 회사의 공장장으로 입사했고, 본인의 지분을 Y1회사에 이전했지만, 그 후에 X는 Y1 회사를 퇴사하였다.
- X는 Y1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고안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그 고안이 Y1 회사에 승계되었으므로, Y1 및 Y2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고안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발명된 것이므로 이 고안이 직무발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Y1 회사와 X사이에 기계장치의 개발의뢰 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용계약이 아니었고, 그 후에 X가 Y1 회사에 입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고용 계약이므로 X의 입사 전에 완성된 발명을 Y1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⁶⁾

◎ 통상적인 관리업무만을 수행한 사람이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도 직무 발명에 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Y)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Y는 주식회사이다.
- X는 부하직원들에게 이 사건 발명들에 대한 개발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고 그 기술개발의

5) 대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6)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가합2717 판결

진행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발명이 완성된 후에는 담당 기술자 등과 공동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발명자로 게재되었다.

- 이 사건 발명들이 등록된 후에 X는 피고 회사(Y)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개발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팀장으로서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 특허발명에 대한 기여요소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통상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하는데 그쳤을 뿐이고, 당면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X)는 이 사건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으며, 출원서에 발명자로 게재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발명을 완성한 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Y)에 대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⁷⁾

- 특허부서 직원이 발명신고서의 청구항을 수정하고 일부 도면 등을 수정하여 특허출원을 명확히 한 경우 공동발명자라고 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의 특허부서에서 연구원 등의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Y주식회사이다.
- Y회사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발명자 A가 이 사건 발명을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의 일부가 Y회사 특허부서를 거치면서 X에 의해 수정되었다.
- 그 후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Y회사가 특허권을 취득하자 X는 피고 회사(Y)에게 직무 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원고(X)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X가 실제 발명자로

7)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6나62159 판결

추정된다고는 할 것이지만,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X는 단지 이 사건 발명의 특허출원업무의 진행과정에서 발명자 A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 사건 양도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만약 실제로 X가 이 사건 발명신고서의 청구항을 수정하고 일부 도면 등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X를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X가 피고 회사(Y)를 상대로 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⁸⁾

◉ 행정업무만 담당하던 공무원이 발명에 참여한 경우,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광역자치단체이며, 피고(Y)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국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 공무원인 Y와 공동고안자인 A는 이 사건 고안을 자유제안의 형식으로 원고(X)에 제안하여 포상을 받았고, 그 후 Y는 A와 함께 출원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한편, A는 Y와 상의 없이 원고(X)에게 직무발명 신고를 하였고, 원고(X)는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고안을 승계하기로 의결하고, Y에게 Y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다.
- Y가 원고(X)의 지시를 거부하자, 원고(X)는 Y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지분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해당 고안이 원고(X)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발명이기는 하나, 공무원 Y가 고안을 하게 된 행위가 Y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Y의 직무수행 내지 직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Y가 근무한 부서에서의 구체적인 업무는 대부분 민원, 행정관리업무였고, Y가 이 사건 고안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었으며,

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Y와 A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업무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고안을 완성한 점, Y와 A가 위 고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원고(X)로부터 업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Y가 담당한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이 사건 고안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X)의 지분 이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별도의 규칙에 의해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를 벗어나는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그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⁹⁾

◆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권리와 의무

●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은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발명을 완성시킨 종업원은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보상을 받을 권리 ③ 발명자 계재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고, ④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⑤ 비밀유지의무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완성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됩니다.¹⁰⁾

나. 보상을 받을 권리

종업원등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¹¹⁾

보상에 대하여 회사와 직원간의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가합9775 판결

10) 특허법 제33조 제1항

1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기준에 의한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 그 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과 ② 그 발명의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규정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직원이 보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발명자 게재권

직무발명을 완성시킨 직원은 특허출원, 출판, 논문 등의 문서에 발명자로서 이름이 게재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발명자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발명자로의 게재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라.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직무발명을 완성한 직원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에 참여한 직원의 공동명의로 회사에 완성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¹³⁾ 이는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회사가 쉽게 파악하여 발명의 안정적인 승계와 기술유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에 대한 통지가 인정되는 시점은 완성사실을 담은 문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도달주의). 직원은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서면 외에 전자문서(이메일, 전자결재 등)에 의한 통지도 문서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이유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수 있는 회사와 직원 간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를 명확히 남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 비밀유지의무

직원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됩니다.¹⁴⁾

만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¹⁵⁾

1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13) 발명진흥법 제12조

14) 발명진흥법 제19조



● 사용자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 연구시설, 연구지원, 기술전수, 교육,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갖지만 직원에게 소정의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가. 법정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원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거나 직원으로부터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은 경우, 회사는 그 특허 등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갖게 됩니다.¹⁶⁾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시킴에 있어서 회사가 일정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법정의 권리입니다.

15) 발명진흥법 제58조

16)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나. 예약승계를 통한 권리취득

회사는 직원이 앞으로 완성시킬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직원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예약승계계약이라고 하며, 직원이 회사에 입사할 때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예약승계계약을 맺음으로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발명 중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미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회사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¹⁷⁾

만약 직무발명이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제삼자와 공동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으면 회사는 그 발명에 대하여 해당 회사의 직원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¹⁸⁾

다. 동의할 수 있는 권리

직원이 특허권을 등록받은 경우, 회사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은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¹⁹⁾

라.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여부 통지 의무

회사는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통지한 직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문서로 회신해 주어야 합니다.²⁰⁾ 회사가 승계하기로 회신할 경우,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²¹⁾

만약, 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직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회사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²²⁾

따라서, 직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완성사실을 통지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승계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할 경우,

17)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18) 발명진흥법 제14조

19) 특허법 제119조 제1항, 제136조 제7항

20)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21)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22)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회사는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승계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조차도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

예약승계에 의하여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²³⁾

또한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을 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소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²⁴⁾



23)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24) 발명진흥법 제16조

◆ 예약승계규정

●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의 직무발명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의 승계여부는 종업원등과 사용자등간의 개별계약에 따라 처리되지만, 사용자등은 적어도 특허권 등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회사는 그 권리의 승계를 요구할 수는 없고 법정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가.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의 취급

승계의사 통지 (대통령이 정한 기간 이내)	不 승계의사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	승계여부 미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종업원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종업원 동의하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나.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취급

종업원 등의 양도의사 無	종업원 등의 양도의사 有 (사용자 등의 양수의자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종업원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



- ◉ 구체적인 예약승계계약이 없더라도 회사의 직무발명제안지침이 있었다면 예약승계 규정으로 볼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피고(Y)는 원고 회사(X)에 입사하여 2008년 퇴직하였다. Y는 X회사에 재직 중에 담당 업무에 관한 이 사건 특허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 X회사는 Y와 직무발명에 관한 예약승계계약을 하지 않았고, Y의 입사 당시 고용 계약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 X회사는 2000년부터 ‘회사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직무발명에 관한 제권리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직무발명제안지침을 사규로 정하였다.

- X회사는 그 동안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Y에 대하여 Y가 취득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지분이전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예약승계규정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명시적인 예약승계계약이나 고용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나, 2000년부터 X회사는 직무발명제안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2003년부터 Y가 퇴사한 2008년까지 5년 이상 Y가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포상을 하였고, Y도 역시 자신이 완성한 대부분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X회사에게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자 간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에 대한 Y의 지분을 X회사에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²⁵⁾

● 직원이 완성한 모든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 규정이 유효한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광역자치단체이고 피고(Y)는 그 소속공무원이다.
- Y와 공동고안자인 A는 이 사건 고안을 자유제안의 형식으로 원고(X)에게 제안하여 포상을 받았고, 그 후 Y는 A와 공동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A는 Y와 상의 없이 원고(X)에게 직무발명 신고를 하였고, 원고(X)는 Y에게 Y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Y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자 Y를 상대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지분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결론

원고(X)의 공무원제안규칙 제28조에서 ‘시장이 공무원제안을 통한 발명이나 고안 등을 채택하는 경우, 그 발명이나 고안 등에 대하여 권리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제안제도의 취지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25) 대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115791 판결

규칙이 공무원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이나 직무고안 등에 한하여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²⁶⁾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완성한 모든 발명에 관한 승계규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규정 전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직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부분은 유효하므로 직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은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유형

일반적으로 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으나, 보상금 종류 및 보상금액 등은 사용자와 직원이 협의하여 정하고,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사용자는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2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가합9775 판결

가. 발명(제안)보상

발명제안보상은 종업원 등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종업원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입니다.

나. 출원보상

출원보상은 종업원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등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입니다. 출원보상은 미획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지만,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출원 배제의 효과와 출원 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다. 등록보상

사용자등이 승계한 발명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되었거나 특허등록되어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라. 실시보상

사용자등이 출원 중인 발명 또는 특허 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등이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 처분보상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으로 실시보상과 마찬가지로 처분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출원유보보상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사내노하우 등으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으로서, 이 경우 보상의 액은 당해 발명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종업원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²⁷⁾

사. 기타 보상

이 밖에도 출원발명의 심사청구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심판에 참여하여 그 권리를 무효로 한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시에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습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에서 개발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 X는 Y회사 재직기간 중에 발명을 완성하였고, X가 완성한 직무발명들은 Y회사로 승계 되었으며 Y회사가 이를 출원하고 등록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 Y회사는 X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X는 Y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7) 발명진흥법 제16조

나.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X가 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인정하고, Y회사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²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 A×B×C×D]

- A :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
- B :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률
- C :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 D : 원고의 기여도



28)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4가합22 판결

● 임금이나 성과급 등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갈음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1998년 피고 회사(Y)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년 4월에 퇴사한 자이다.
- X는 Y 회사에 재직 중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고,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Y회사에게 양도하였다.
- Y회사는 위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X는 Y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법률은 강행규정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행사 및 보상금의 정당한 액수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은 무효이고,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기 사건에서 Y회사가 X와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X에게 Y회사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약 1억 2400만원 상당을 자문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주었으며 성과급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²⁹⁾

또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직무발명의 완성대가로 임금을 인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급여에 관한 것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과는 다른 성격의 채권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³⁰⁾

●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업무가 다른 회사로 양도(M&A)되었을 경우, 이전 회사에 근무할 때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새로운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공동피고인 Y1 회사에 재직 중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Y1 회사에 양도한 자이다.

29) 대법원 2009. 10. 7. 선고 2009나268409 판결

30)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316 판결

- Y1 회사는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고, Y1 회사는 무선단말기사업부분에 관한 자산, 채무, 영업비밀, 계약상 지위 등을 Y2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X는 Y2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위와 같은 사건에서 X는 Y1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정하고 있는 ‘처분보상’의 규정에 따라서, Y1 회사가 Y2 회사와 체결한 양도계약에 따라 특허권을 양수한 Y2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라이선스하여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X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Y2 회사는 Y1과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무형자산 중 일부의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만을 인수하였을 뿐 X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상금 채무는 인수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X로서는 Y1, Y2가 이 사건 각 특허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실시료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처분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자명하므로, X의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은 계속적인 라이선스 발생 이후에 비로소 행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X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X가 Y1 회사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Y1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정한 각 사유에 따른 개별적인 보상금 청구권은 각 사유의 발생시점에 함께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Y1 회사와 Y2 회사의 양도기준일(2001. 4. 30.)을 기준으로 양도기준일 전에 발생한 보상금은 Y1 회사가, 양도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보상금은 Y2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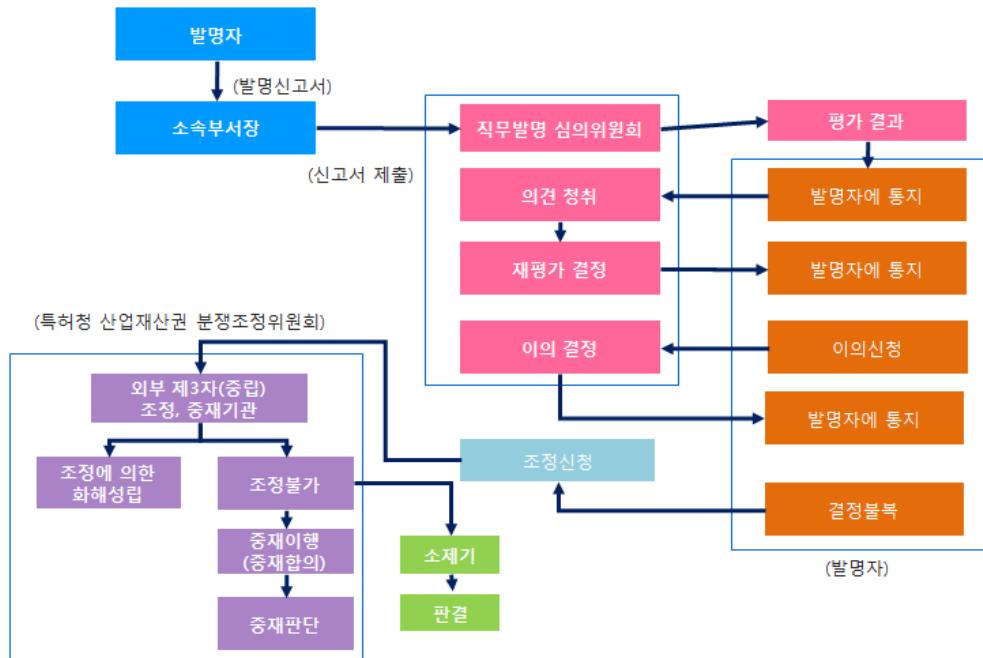
❖ 직무발명을 둘러싼 다툼의 해결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상금 청구권은 사법(私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등을 두어 발명자 지원과 회사 간에 송사(訟事)가 발생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기 전에 특허청에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2013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직무발명 보상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의 발단은 결정된 ‘보상액’에 대한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먼저 보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단계에서 사용자 등이 결정한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설명에서 직무발명규정의 적용,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액,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등이 한 부담, 공헌 및 종업원등의 처우, 자사 및 타사에서의 종래의 사례, 기타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발명자인 종업원등은 발명 그 자체의 기술적 평가가 높은 것에 비례하여 반드시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발명을 제품화하고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의 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발명자가 스스로 그 발명을 사업화하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보상액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된 보상액에 관하여 종업원등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의 불씨가 되는 불만에 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그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복신청에 관하여 심의할 사내기관을 마련해 두고, 그 기관에는 중립·공정을 기하기 위해 또는 종업원등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흑백을 가리므로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항소, 상고라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어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제출된 주장과 입증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완전한 입증을 한다는 것이 당사자에게 용이한 일은 아니며, 사용자등의 공헌도, 발명자 측의 공헌도와 같은 대응하는 요소의 판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어떤 평가방법으로 정하는가 라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의 예측, 보상액의 예측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 소송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회피하고, 사태 해결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해결에 이르는 지름길이 소송에 의한 승패만은 아닙니다. 회사는 발명자인 직원을 이해하고, 직원은 회사를 신뢰한다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내고, 서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함으로써 보상액을 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상 결정을 위한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청취가 이루어 진다면, 분쟁의 예방이 가능하며, 설사 발생하였다고 해도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기타

●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한 직무발명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가 됩니다. 다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됩니다.³¹⁾

31)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이 국가 등에 승계된 경우에도 역시 승계한 측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³²⁾ 그리고 국유가 된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는 특허청장이 관장합니다.³³⁾

● 퇴직 후 발명 또는 출원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후의 발명 또는 출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됩니다. 퇴직 후 발명은 원칙적으로는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명이 재직 중에 완성된 것이라면 퇴직 후에 출원하더라도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퇴직 후에 완성된 경우라도 그 발명의 상당 부분 또는 주요 부분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완성시점이 퇴직 전인가 후인가의 판단은 매우 곤란하므로 그에 관한 대비책으로 퇴직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발명은 종전의 사용자등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규정, 이른바 추적조항(追跡條項)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구적인 추적조항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추적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민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3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

33) 발명진흥법 제10조 제4항

개정 발명진흥법(직무발명관련) 및 동시행령(안)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 추진 경과

- 제안일: '12. 12. 5(지경위 회부, '12. 12. 6), 새누리당 유승민의원 등 13인
 - 제안 이유: 대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을 제한하고, 직무발명 보상과정에서 종업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
- 대안 반영(4. 23): 기존 안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발명교육 활성화, 연구노트 활용 촉진 등을 통합하고, 일부 자구에 대해 보완
- 법사위 의결(6. 20), 본회의 의결(6. 25), 정부 이송(7. 17) 및 공포(7. 30)

□ 주요 개정 내용(직무발명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직무발명제도 미도입 대기업에 대한 통상실시권 제한(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통상실시권을 제한, 제도의 도입 및 정당한 보상 유도
 - * 기존 법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주어짐(단, 권리는 종업원 귀속)
- 직무발명 보상과정에서의 종업원의 협상력 강화(제15조제2 내지 6항)
 -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변경 시 종업원과 협의하고, 종업원에게 불리한 변경시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작성된 보상규정 및 보상액 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 기존 발명진흥법: 협의의 상황, 보상 기준 제시, 의견 청취 등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
- 직무발명 보상에서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 강화(제18조)
 - 종업원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이견 등*이 있을 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심의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직무발명 여부(1호),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승계(2호), 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 승계(3호), 기간 해태 이후 통상실시권의 주장(4호), 보상 규정에 이견

(5호),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6호), 보상에 대한 이견(7호), 규정에 반하는 보상(8호), 그 밖의 이견(9호)

- 직무발명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규정 마련(제17조)
 -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 · 변경, 이견 조정 등을 위한 직무발명심의 위원회를 설치(재량사항), 구성 및 운영을 규정
- 제18조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문위원의 비밀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제60조) 마련 등

발명진흥법(직무발명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

- 개정 발명진흥법 중 대통령 위임 사항은
 - i)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작성·변경 시 ① 협의·동의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등의 범위와 ② 절차(제15조제5항)
 - ii)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7조제3항)
 - iii) 정부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파견할 때 필요한 사항(제18조제5항)
 - iv) 과태료 규정(제60조) 등이며,
-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여 기업이 직무 발명 보상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

2013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작성

감	수	_ 산업재산정책국	국	장	권혁중
		산업재산진흥과	과	장	구영민
		산업재산진흥과	사무관	여덕호	
		산업재산진흥과	주무관	정래영	
작	성	_ 한국발명진흥회	팀	장	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차	장	허동욱
		한국발명진흥회	주	임	이민희

■ 발 행 _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한국발명진흥회

■ 발행일_ 2013년 12월



**2013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